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돌봄특례시 완성

시민용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나에게 힘이 되는

2024년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목 차

♡ 든든한 복지안전망(기초생활보장사업 등)	5
♡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14
♡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17
♡ 지역복지 증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8
♡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20
♡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22
♡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	24
♡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32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34
♡ 어르신 치매검진 등 건강 지원	37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41
♡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2
♡ 아이행복, 부모행복,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58
♡ 내·외국인 함께하는 모두의 도시(다문화가족)	65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추진	69

2024년 사회복지서비스 세부내역

관련 법령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총 39개 지침	61개 사업	174개 서비스	총 332개 (경로당 등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료·주거·교육급여사업안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안내	1.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생계, 의료(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노인개안수술, 무릎관절수술), 주거 교육 (교육활동지원비 등), 해산, 장애급여 긴급생계 급여, 정부양곡지원사업 등(감면제도 포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본인부담 경감: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입원외래, 65세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추나요법) / 만성질환자·18세미만인자(입원, 외래, 65세이상 틀니·치과 임플란트, 심·뇌혈관 질환자, 추나요법),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 계층
자활사업안내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안내)	2.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구 통장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 통장 (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 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지역자활센터 3 노숙인자활시설 1 노숙인관련시설 3	
	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사업	-시비사업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가족 위문금 -도비사업 생활보조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보훈수당	보훈회관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4.사회복지관 및 푸드뱅크사업	-사회복지관(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푸드뱅크사업(결식아동, 독고노인 등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받아 물적나눔 지원)	사회복지관 5 푸드뱅크 5	
	5.수원새빛돌봄사업	신체활동, 가사지원, 대청소, 소독, 병원동행, 일상생활동행, 성인심리상담,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중독관리상담, 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무한돌봄사업안내	6.긴급복지 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긴급지원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무한돌봄사업 생계, 주거,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구직활동비, 긴급통합지원	휴먼서비스센터 1	

관련 법령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7.한부모(조손)가족 자립지원사업	-한부모(조손)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고교교육비,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입학금, 대학입학준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급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한부모 관련시설 2	여성 등
아동분야사업안내 아동수당사업안내	8.출산장려 및 입양 문화정착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입양지원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둘째자녀이상 한약할인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아동분야사업안내	9.가정위탁아동 선정 및 지원사업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체험학습비, 대학준비금, 특별학습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10.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안내	11.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육아부담 경감)		
	12. 1인가구 지원	-수원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쏘옥" (1인가구 맞춤형 정보 및 소통공간 제공) -1인가구 "쏘옥" 패밀리 운영 (정책발굴, 홍보, 모니터링)		
	13.가족여성회관 운영	가족여성회관(가족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여성회관 1	
	14.여성문화공간-휴 운영	여성문화공간-휴(여성의 건강, 문화, 교육, 공동체 활동, 심신상당 등)	여성문화공간-휴 1	
가족사업안내(1권)	15.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16.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설, 주야간, 방문요양, 목욕, 복지용구	장기요양시설 464	노인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안내	17.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수행기관 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안내	18.독거노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설치	서비스 수행기관 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19.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일상생활지원, 사례관리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6개소	
기초연금사업안내	20.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수원시 효사랑지원금, 효도수당 지원	21.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사업	효도수당, 효사랑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2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및 수행기관	일자리수행기관 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23.경로당 및 대한 노인회지회 운영	-경로당(여가활동 지원), -노인회지회(노인대학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경로당 524 노인회지회 4개구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24.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관 6 경로식당 10	

관련 법령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치매정책사업 안내	25.치매 등 건강지원 사업	치매검진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예방관리(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프로그램(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4	보건소
의료급여사업 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26.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어르신 개안수술, 틀니, 치과 인플란트, 무릎인공관절수술, 국가예방접종지원		보건소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27.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교통비, 문화활동비, 국민건강보험료, 이동통신 통신요금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8.장애인등록 신청절차 등	장애인등록 신청절차(등록장애인 복지서비스 별도)	새빛이음(수원특례시 발달장애종합정보시스템) 참조	장애인
장애인연금사업안내	29.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30.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31.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제공기관	활동지원 제공기관 1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안내	32.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서비스 수행기관 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4.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5.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및 제공기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6.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5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7.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 및 제공기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8.장애인가족양육지원	장애인가족양육지원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9.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업체 9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40.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및 수행기관	일자리수행기관 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41.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복지관 2	
보육사업안내	42.부모급여(영아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 등
보육사업안내	43.가정양육수당(장애아 양육수당 포함)	가정양육수당(장애아 양육수당 포함)		
보육사업안내	44.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경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0~5세·다문화 포함, 장애아, 야간, 방과후, 법정저소득층 차액, 누리차액, 유아학비 시간연장, 기관보육료) -보육경비(입학준비, 현장학습비)		
다함께돌봄사업안내	45.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사업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사업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20 학교돌봄터 1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46.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전자카드, 학교급식소		
청소년사업안내	47.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사용범위	청소년관련시설 9	

관련 법령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관련 시설	비고
가족사업안내(1권, 2권)	48.거주이주민 시설 운영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조기적응 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 및 상담, 성평등 및 인권, 교류소통공간 운영 등), -외국인복지센터 (재수원교민회 통역지원사업 외국인 노동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외국인복지센터 1	다문화
가족사업안내(1권, 2권)	49.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자 지원, 다문화가족 신문구독 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지원		
경기도 외국인 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50.거주외국인 지원	거주외국인 긴급지원, 생활안전교육, 생활안내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대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의료급여사업 안내	51.보건소 건강증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진료, 생애전환주기별 건강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아동담당의 의료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안내	52.보건소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mam편한 임신통합 제공서비스, 산후조리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임신부 우울 선별검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유축기 대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사업안내	53.보건소 건강증진 (난청 및 보청기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	54.보건소 건강증진 (암환자 등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성인, 소아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안내	55.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취약계층 방문보건, 어르신 방문보건		
정신건강사업 안내	56.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행복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마음건강 관리사업, 상담실 운영 등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57.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정신건강 선별 검진 후 전문의 상담 및 사례관리, 맞춤형 조기 중재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58.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성인정신건강 복지센터)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59.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수원시 노인정신건강 복지센터)	노인 정신질환 상담 및 등록 관리 등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1	
자살예방사업 안내	60.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업, 자살예방교육 등	자살예방센터 1	
정신건강사업 안내	61.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질환 관리사업 및 가족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사례관리 등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1	

튼튼한 복지안전망(기초생활보장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지출실태 확인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 확인)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 선정기준 (단위 :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가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각 사업팀) 보장결정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2.5%;">1인</th> <th style="width: 12.5%;">2인</th> <th style="width: 12.5%;">3인</th> <th style="width: 12.5%;">4인</th> <th style="width: 12.5%;">5인</th> </tr> </thead> <tbody> <tr> <td>'24년 기준 중위소득</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r> <tr> <td>생계급여(중위 32%)</td> <td>713,102</td> <td>1,178,435</td> <td>1,508,690</td> <td>1,833,572</td> <td>2,142,635</td> </tr> <tr> <td>의료급여(중위 40%)</td> <td>891,378</td> <td>1,473,044</td> <td>1,885,863</td> <td>2,291,965</td> <td>2,678,294</td> </tr> <tr> <td>주거급여(중위 48%)</td> <td>1,069,654</td> <td>1,767,652</td> <td>2,263,035</td> <td>2,750,358</td> <td>3,213,953</td> </tr> <tr> <td>교육급여(중위 50%)</td> <td>1,114,222</td> <td>1,841,305</td> <td>2,357,328</td> <td>2,864,956</td> <td>3,347,867</td> </tr> </tbody> </table>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생계급여(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생계급여(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32% 해당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과 차액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713,102원)-가구 소득인정액(300,000원) = 413,102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시설 (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일반수급자 등)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보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 지원(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해산급여 장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80만원 지급(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구청 (사회복지과) 	

□ 긴급 생계급여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 주소득원의 사망·질병·부상, 부 또는 모의 가출,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p> <p>- 위기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p>• 긴급 생계급여액 지원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10%;">1인</th> <th style="width: 10%;">2인</th> <th style="width: 10%;">3인</th> <th style="width: 10%;">4인</th> <th style="width: 10%;">5인</th> </tr> </thead> <tbody> <tr> <td>기준 중위소득의 15%</td> <td>334,267</td> <td>552,391</td> <td>707,199</td> <td>859,487</td> <td>1,004,360</td> </tr> </tbody> </table> <p>※ 긴급 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 시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p>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의 15%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 (사회 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각 사업팀) 보장결정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의 15%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 의료급여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등)</p> <p>• 지원유형</p> <p>- 1종 : 근로능력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8세 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타법 수급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p> <p>- 2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p> <p>• 본인 부담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차(의원)</th> <th>2차(병원, 종합병원)</th> <th>3차(상급종합병원)</th> <th>약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종</td> <td>입원</td> <td>없음</td> <td>없음</td> <td>-</td> </tr> <tr> <td>외래</td> <td>1,000원</td> <td>1,500원</td> <td>2,000원</td> <td>500원</td> </tr> <tr> <td rowspan="2">2종</td> <td>입원</td> <td>10%</td> <td>10%</td> <td>10%</td> <td>-</td> </tr> <tr> <td>외래</td> <td>1,000원</td> <td>15%</td> <td>15%</td> <td>5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p>• 연중 (본인 친인척 등)</p> <p>•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의료급여팀) 보장결정 및 통지 (의료급여팀)</p> <p>- 사례관리 실시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이용, 장기입원, 연중관리군 등)</p>	<p>•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p> <p>•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p>• 의료급여 지원(범위)</p> <p>-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산소치료, 당뇨성소모성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 양압기 치료 등</p> <p>- 임신·출산 진료비</p> <p>▶ 1, 2종 구분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p> <p>▶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진료비는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되는 날까지 사용]</p> <p>- 장애인보조기기</p> <p>▶ 급여대상 유형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p> <p>▶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 / 신청(시군구, 읍면동)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시군구) / 보조기기 구입(등록된 업소) / 보조기기 검수(처방전 발급할 수 있는 의사, 판매업자 등 대행불가) / 구입비용 지급청구(시군구) / 구입비용 지급(시군구) / 사후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p> <p>- 기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사업(노인들니, 임플란트 등) 보건소 업무 참조</p>		<p>• 연중 (본인 친인척 등)</p> <p>•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 구청(사회복지과) 결정 및 지원</p>	<p>•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p> <p>•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주거급여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069,6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3,035원 등) 지원내용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보수 지원 지원기준 (단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본인 친인척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주거복지팀) 보장결정 및 통지 (주거복지팀) - 급여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비고		
주거급여 지원기준	임차급여 지급기준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2급지 (수원)		
	2급지 기준임대료의 60%	160,800	180,000	214,800	248,400	256,800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적용기준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106,800	120,600	143,400	166,800	172,2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제3자 제공 전체	83,304	94,068	111,852	130,104	134,316			
	제3자 제공 부분	21,360	24,120	28,680	33,360	34,44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 정부 양곡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 지원내용 급여종류별 정부양곡 판매가의 60% ~ 90%를 할인지원 지원기준 : 1인당 월 10kg 지원 공급가격 (단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 양곡대금 지원 (생활보장팀) - 양곡 택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개인 부담	택배비			
신곡 (23년산)	10kg (25,13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90%할인)	2,500	2,800 (1포당)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0%할인)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대금 지원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에서 지출 ※ 택배용역 위탁계약은 농식품부와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전국 자활기업)이 계약 체결 						

○ 기타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구 분	지 원 대 상	문의 등
TV수신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수신료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주거급여 제외
주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000원 ※ 하절기(6,7,8월) 월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0,000원 ※ (하절기(6,7,8월) 월 최대 12,000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가구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1600-3190
도시가스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48,000원 / 비동절기(4~11월) :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48,000원 / 비동절기(4~11월) :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48,000원 / 비동절기(4~11월) : 2,470원 	동 행정복지센터 삼천리도시가스 ☎ 1544-3002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3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1544-3412
민원 수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시설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주거급여 제외

구 분	지 원 대 상	문의 등
상하수도 요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매월 4,700원(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수도 매월 4,270원(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신청한 익월부터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종량제봉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인 40ℓ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통신요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41,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30,000원 한도) 유선전화, 인터넷요금 등 감면 ※ 자세한 사항은 통신사에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사 대리점
압류방지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금융기관에 "수급자증명서"제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거주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부에게 100만원 지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14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외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주택 전세임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LH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우체국 공익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원의 행복보험 - 만 15세 ~ 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우체국예금보험 ☎1599-0100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지원제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97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p>•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진단서 발급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여부 확인 및 수급자격 상실일로부터 90일 이내 소급요청 여부 확인 필요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공단)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시행) <p>•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구청)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공단)</p> <p>•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경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상의 변동 및 질환 부정적 등으로 인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지 ※ 공단은 질환, 연령(18세미만) 등 변동사항 조사</p> <p>•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1인</th> <th style="width: 15%;">2인</th> <th style="width: 15%;">3인</th> <th style="width: 15%;">4인</th> <th style="width: 15%;">5인</th> </tr> </thead> <tbody> <tr> <td>'24년 기준 중위소득</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r> <tr> <td>차상위(중위 50%)</td> <td>1,114,222</td> <td>1,841,305</td> <td>2,357,328</td> <td>2,864,956</td> <td>3,347,867</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는 기존세대에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부양능력 확인 불필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차상위(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가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결정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차상위(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구	분	지원내용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추나요법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 자활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이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자활사업 참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이상 64세 이하) -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참여 희망자(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 특례수급자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비수급권자 • 지원내용 : 일자리 유형 및 참여자 수, 근로조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근로능력 판정 요청(국민연금공단-접수 후 21일 이내 통지), 보장결정 요청 → 시청 (각 사업팀) 보장결정 및 통지, (자활지원팀) 자활지원계획 수립(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계 (명)	근로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기타 (복지도우미 등)
참여 자수	510	5	255	126	124
주요 사업		행정복지센터 공공근로	화초, 복지간병, 리터워시 임가공, 인테리어 국수에 헤어클린 에어콘 살균세척 등	택배, 프랜차이즈 외식, 홈패션 제작, CU편의점, 청년카페, 정부양곡배출 등	자활지원 상담, 청년자립도전, 복지도우미, 자활기업 등
근로 조건		1일 5시간, 주5일, 표준 월소득 72만원	1일 8시간, 주5일, 표준 월소득 130만원	1일 8시간, 주5일, 표준 월소득 150만원	표준 월소득 150만원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월소득 상이)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참여인원	비고
수원 지역자활센터	팔달구 중부대로 6 (중동, 신원빌딩 3층)	031-232-0179	170명	
우만 지역자활센터	팔달구 장다리로 201, 8층 (인계동)	031-231-9208	180명	
희망 지역자활센터	장안구 수성로 274, 6층 (영화동)	031-257-3991	16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자산형성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년 및 지자체장 선정 근로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p> <p>• 자산형성지원사업(舊 통장) 세부내용</p>						<p>• 신규신청 중단</p>	<p>•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p> <p>• 사례관리 담당 지역 자활센터</p> <p>•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p>
구 분	희망키움 통장1	희망키움 통장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15세~39세)		
적립 내용	지원 내역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153,000~779,000원) + 민간매칭금 2만원 (본인 저축시)	본인 저축액 1:1 매칭 (최대10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 매출액 1:1 or 1:0.5) +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월15만원)	본인소득 비례 일정비율 (월 최대 679,000원) +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 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	본인저축액 1:3 매칭		
	3년 평균 적립액	1,933만원 (최대 3,078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20만원 저축 시) 2,268만원 (최대2,3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944만원 (최대 2,588만원) +이자 ※근로소득 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자산형성지원사업(新 통장) 세부내용</p>						
구 분	희망저축 계좌Ⅰ	희망저축 계좌Ⅱ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초과)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114,222원) 청년 (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100% (1인 가구 1,114,222원~ 2,228,445원) 청년 (19~34세)		
적립 내용	지원 내역	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30만원 정액 매칭	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10만원 정액 매칭	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30만원 정액 매칭	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10만원 정액 매칭	
	3 년 평 균 적 립 액	1,440만원(최대 2,88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최대 2,88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유예기간 6개월)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간 (본인 가구원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 구청 (사회복지과) 지원대상자 선정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시청 (자활지원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가입자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계좌 생성 → 시청/구청 근로소득장려금 및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사례관리 담당 지역 자활센터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지급 시기</th> <th style="width: 30%;">지급대상</th> <th style="width: 10%;">지급액 (만원)</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보훈 명예수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참전 매월 25일</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① 매월1일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② 65세 이상자 (59년 생일월부터 지급) *재외국민 지급 가능 </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6.25, 월남 참전유공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훈 매월 2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 국가유공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망위로금</td> <td>매월 2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사망일 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나이 무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보훈가족 위문금</td> <td>6월중 (연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道 생활 보조보훈수당</td> <td>매월 2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중위소득 50%이하(1인기준 111만원) 국가보훈 대상자(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道 참전 명예수당</td> <td>6월중 (연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기준일(6.15.) 수원시 거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道 5·18민주 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td> <td>매월 2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중위소득 100%이하(1인기준222만원) 5·18 민주유공자</td> </tr> </tbody> </table>						구 분	지급 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만원)	비고	보훈 명예수당	참전 매월 25일	① 매월1일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② 65세 이상자 (59년 생일월부터 지급) *재외국민 지급 가능	10	6.25, 월남 참전유공자	보훈 매월 25일	8	그 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매월 25일	20	사망일 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나이 무관)	보훈가족 위문금		6월중 (연1회)	3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道 생활 보조보훈수당		매월 25일	10	중위소득 50%이하(1인기준 111만원) 국가보훈 대상자(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道 참전 명예수당		6월중 (연1회)	40	기준일(6.15.) 수원시 거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道 5·18민주 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매월 25일	10	중위소득 100%이하(1인기준222만원) 5·18 민주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 대상자 결정 및 지원 (시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지급 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만원)	비고																																									
보훈 명예수당	참전 매월 25일	① 매월1일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② 65세 이상자 (59년 생일월부터 지급) *재외국민 지급 가능	10	6.25, 월남 참전유공자																																									
	보훈 매월 25일		8	그 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매월 25일	20	사망일 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나이 무관)																																									
보훈가족 위문금		6월중 (연1회)	3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道 생활 보조보훈수당		매월 25일	10	중위소득 50%이하(1인기준 111만원) 국가보훈 대상자(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道 참전 명예수당		6월중 (연1회)	40	기준일(6.15.) 수원시 거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道 5·18민주 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매월 25일	10	중위소득 100%이하(1인기준222만원) 5·18 민주유공자																																									
<p>•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등</p>																																													

지역복지 증진(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복지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 : 5개소 • 이 용 대 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지역주민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사례발굴 및 개입, 서비스 연계,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연무사회복지관	장안구 창룡대로 151번길 8 (연무동)	031-245-7576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166번길 10 (호매실동)	031-291-8475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우만동)	031-254-1992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반달로 45 (영통동)	031-201-8304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대학2로 41 (이의동)	031-212-7255	

□ 푸드뱅크사업 추진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 5개소 • 이 용 대 상 :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물적 나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뱅크

○ 푸드뱅크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수원푸드뱅크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38-1378	
수원시 해누리푸드마켓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38-1378	
장안푸드뱅크	장안구 장안로 63번길 8(영화동)	031-271-1377	
팔도푸드뱅크	권선구 새터로 47번길 88(세류동)	031-221-9004	
영통푸드뱅크	영통구 매봉로 27번길 40, 1층 (매탄동)	031-212-1641	

수원 새빛돌봄사업

○ 수원 새빛돌봄서비스란?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특성을 가진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을 도입, “수원 새빛돌봄 서비스”를 통해 공공돌봄서비스 확대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 시행 : 2024년 1월 1일(44개 전체 동) ~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 노인, 장애인, 아동, 1인가구(청년, 장년)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단, 중위소득 75% 초과자의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2024년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비 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기준중위소득 75%	1,672,500	2,762,250	3,536,250	4,297,500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비 고
직장 건강보험료	59,489	98,176	125,907	153,96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역 건강보험료	19,780	55,769	92,708	117,239	
혼 합 가 입 자	59,820	99,095	127,394	156,115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 연 100만원 한도내 돌봄비용 지원(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자부담 이용 가능)

○ 수원 새빛돌봄서비스의 유형

• 추가형 돌봄서비스(4대 11종)

4대 서비스	방문가사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서비스 내용	가정방문하여 대상자 수발 및 주거환경개선 ①신체활동, ②가사지원, ③대청소(정리정돈) ④소독·방역)	이용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⑤병원 동행, ⑥일상생활 동행	⑦성인심리 상담, ⑧아동·청소년·심리상담, ⑨중독관리 상담	⑩단기간 보호, ⑪변려동물 일시보호
이용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1시간 24,120원 -대청소 지원(1년 1회) 최소 50만원 소 100만원 중 150만원 -소독·방역(1년 3회) 1회(2차례) 10만원	1시간 16,200원 (1일 8시간) ※ 교통비 연간 한도액 15만원 이내 사용 가능	1회 6만원~8만원	1일 70,500원 연간 14일 (12시간 미만 이용 시 50% 감액) ※ 입소 기간 중 식대 전액 자부담 반려견은 1일 6만원/ 연간 16일, 차량이송, 입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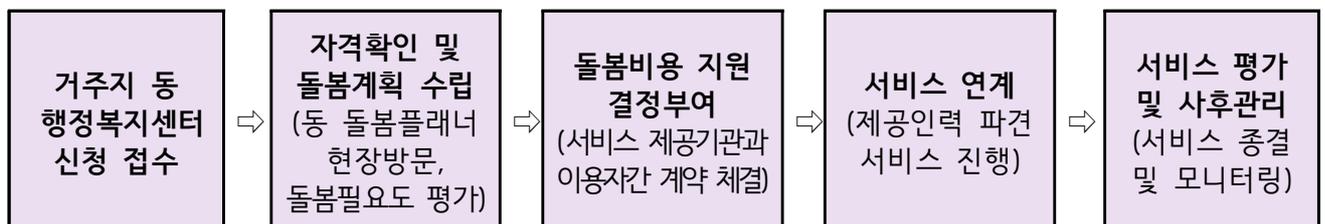
•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

- 제안대상 : 도움이 필요한 시민 등 지역주민 누구나
- 제안안건 :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특화사업
- 제안창구 :洞 행정복지센터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심의기구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市 민·관·학 통합돌봄 추진위원회

○ 수원 새빛돌봄서비스 신청

- 洞 돌봄전담 창구(돌봄플래너 배치)
- 휴먼콜센터(1899-3300)
- 모바일앱(새빛톡톡)

○ 수원 새빛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p> <p>- 위기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p>▶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p> <p>• 보장절차 : 차대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지출실태 확인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 확인)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p>•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p> <p>•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심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돌봄정책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긴급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비 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기준중위소득 75% 국비 긴급지원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 일반재산 241백만원 - 금융(6백만원 + 가구별 생활준비금)	
기준중위소득 100%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 일반재산 372백만원 - 금융(12백만원 + 가구별 생활준비금)	
• 긴급지원 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1,833.5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교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지원 세부기준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

□ 한부모(조손)가족 자립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지출실태 확인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 확인)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 선정기준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2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3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4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5인</th> </tr> </thead> <tbody> <tr> <td>'24년 기준 중위소득</td> <td style="text-align: right;">3,682,609</td> <td style="text-align: right;">4,714,657</td> <td style="text-align: right;">5,729,913</td> <td style="text-align: right;">6,695,735</td> </tr> <tr> <td>한부모 및 조손(중위 63%)</td> <td style="text-align: right;">2,320,044</td> <td style="text-align: right;">2,970,234</td> <td style="text-align: right;">3,609,845</td> <td style="text-align: right;">4,218,313</td> </tr> <tr> <td>청소년한부모(중위 65%)</td> <td style="text-align: right;">2,393,696</td> <td style="text-align: right;">3,064,527</td> <td style="text-align: right;">3,724,443</td> <td style="text-align: right;">4,352,228</td> </tr> <tr> <td>청소년한부모증명(중위 72%)</td> <td style="text-align: right;">2,651,478</td> <td style="text-align: right;">3,394,553</td> <td style="text-align: right;">4,125,537</td> <td style="text-align: right;">4,820,929</td> </tr> </tbody> </table>	구 분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한부모 및 조손(중위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청소년한부모(중위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청소년한부모증명(중위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구청 (가정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 (가정복지과)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구 분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한부모 및 조손(중위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청소년한부모(중위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청소년한부모증명(중위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한부 모 (국·도 비)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인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5만원/인		
		만25세이상 만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인
			만6세이상 만18세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5만원/인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국비)	• 중·고등학생에 재학중인 자녀			93,000원/인 연 1회(7월)
	학습재료비 (도비)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월 15천원/인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 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1회당 5만원/세대 연 2회(설날, 추석)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부 지침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월 10만원/인 ※ 아동양육비(국비) 대상자 제외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금	• 저소득 조손가족 중 국내 대학 신입생 ※ 2024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제외한 차액 지원)			500만원 내 (1회, 실비지원)
조손가족 손자녀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 중 국내 대학 신입생 ※ 대학생활에 필요한 과비, 태블릿pc, 교재비 등 지원		250만원 내 (1회, 실비지원)		
청소년 한부 모 (국비)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아동	월 35만원/인 (※ 단,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은 월 14만원/인)		
	검정고시 학급지원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가구		

□ 출산장려 및 입양문화 정착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p>•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 원 대 상</th> <th>지 원 액</th> </tr> </thead> <tbody> <tr> <td>첫만남이용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td> <td>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td> </tr> <tr> <td>출산지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 </td> <td>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td> </tr> <tr> <td>아동수당</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0~8세(0~95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5개월간 지급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td> <td>매달 10만원(현금 지급)</td> </tr> <tr> <td>입양지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자녀 이상 자녀의 입양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신고를 한 경우 </td> <td>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 ※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 </td> </tr> <tr> <td>입양아동 양육수당</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 입양한 가정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td> <td>월 20만원/1인</td> </tr> <tr> <td>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td> <td>월 25만원/1인</td> </tr> <tr> <td>둘째자녀 이상 한약 할인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일 1개월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이상 출산 여성 </td> <td>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조제 시 10만원 할인 (차액 본인 부담)</td> </tr> <tr> <td>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수원시 거주한 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돌봄과에서 지급) </td> <td>신생아 1인 기준 100만원</td> </tr> <tr> <td>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의 모(母)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임신 4개월 이상)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돌봄과에서 지급) </td> <td>출산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첫만남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출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0~8세(0~95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5개월간 지급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매달 10만원(현금 지급)	입양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자녀 이상 자녀의 입양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신고를 한 경우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 ※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	입양아동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 입양한 가정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월 20만원/1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월 25만원/1인	둘째자녀 이상 한약 할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일 1개월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이상 출산 여성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조제 시 10만원 할인 (차액 본인 부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수원시 거주한 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돌봄과에서 지급) 	신생아 1인 기준 1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의 모(母)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임신 4개월 이상)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돌봄과에서 지급) 	출산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첫만남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출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0~8세(0~95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5개월간 지급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매달 10만원(현금 지급)																															
입양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자녀 이상 자녀의 입양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신고를 한 경우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 ※ 기존의 자녀 수에 입양 자녀를 포함																															
입양아동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 입양한 가정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월 20만원/1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월 25만원/1인																															
둘째자녀 이상 한약 할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일 1개월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자녀이상 출산 여성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조제 시 10만원 할인 (차액 본인 부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의 부(夫)가 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수원시 거주한 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돌봄과에서 지급) 	신생아 1인 기준 1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의 모(母)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임신 4개월 이상)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청 장애인돌봄과에서 지급) 	출산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p>• 구비서류 : 신청서 등</p>																																	

□ 가정위탁아동 선정 및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보호 연장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구비서류 : 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조회 동의서, 가정위탁보호(가족) 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특수상병기록 포함) 등 • 가정위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 전문위탁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 가정위탁 선정기준 :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일반위탁가정)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시청) 및 보호 결정(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절한 양육 및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위탁가정 환경조사 등 ※ 경기남부 가정위탁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31-234-3980) → 시청 (아동 돌봄과)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 → 구청 (가정 복지과) 아동의 보호결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양육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또는 만18세 이후 연장보호가 결정된 아동 	월 40만원/인 ※ 2022.1.1.부터 40만원	
아동용품구 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책정된 가정위탁 아동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비용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100만원 지급(1회)	
특별 위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아동 전체 	1회당 4만원/인 (연 4회) ※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학습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학교밖 청소년 포함) ※ 학습활동을 위한 문구, 학습지 등 구매비용 지원 	월 2만원/인	
교육 보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중 교과목 외 학원비(방문학습지, 체육시설업 교습비, 참고서비 포함) 	월 20만원이내/인(실비) ※ 참고서비 차등지원 (초등 연20, 중등 연30, 고등 연 50천원)	
체험 학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체험학습 참가자 	14만원/인(실비) 한도 내 지원, 횟수제한 없음	
대학 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학년도 기준 도내 거주중인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250만원 (정액지급)	
특별 학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기간 중 학원등록자 (중·고등학생) 	중학생 16만원, 고등학생 20만원 ※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연 2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일반형/종합형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아동 - 기관 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기본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정 ▶ 한부모(조손가족 포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0~1세 자녀 양육 가구 - 가구유형 판단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장기요양 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금액 산정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및 소득조사 및 등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가정복지과) 지원 유형 최종 결정 및 통지 → 시청 (여성정책과) 서비스제공기관 (수원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 수원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거주 영유아·부모 및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 운영시간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70 경남아너스빌(아) 커뮤니티공간 1층 - 월~금(10:00~19:00) ※ 12:30~13:30 점심시간 / 주말·공휴일 휴무 - 혼합형(오전 공동육아나눔터 + 오후 초등돌봄나눔터)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보 공유 및 품앗이 활동공간 제공 ▶ 맞벌이 가정 초등돌봄 서비스 (정원 15명 / 현원 10명) ▶ 초등돌봄 서비스 참여 부모 & 자녀 통합 프로그램 ▶ 초등돌봄 서비스 참여 부모 교육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여성정책과 (☎228-2496) • 수원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245-1310) • 수원시 공동 육아나눔터 (☎295-1315)

□ 1인가구 지원사업

대상 및 주요사업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수원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쏘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 2024. 1. 8. ~ 지속 - 쏘옥(수원시 1인가구 포털) https://www.suwon.go.kr/web/1insuwon/index.do - 주요내용 : 1인가구 맞춤형 정보 및 소통 공간 제공 - 포털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 1인가구 정책 - 1인 가구 정책 버전 및 목표 </td> <td style="width: 25%;"> 사업안내 - 사업 안내 및 링크 연결 </td> <td style="width: 25%;"> 소통공간 - 1인가구 소통 </td> <td style="width: 25%;"> 기관안내 - 유관 기관 소개 </td> </tr> </table> • 1인가구 쏘옥 패밀리 운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기간 : 2024. 3. 20.(수) ~ 지속 - 지원자격 : 1인가구 또는 1인가구 지원에 관심있는 수원 시민 ※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수원시 실제 활동 및 거주 시민 포함 - 활동내용 : 1인 가구 정책 발굴 및 홍보, 정책 모니터링 등 - 활동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행사 우대 및 자원봉사 인정 ▶ 1인가구 정책 얼리버드 : 1인가구 사업 안내 SMS 수시 발송 ▶ 우수정책 제안자 참여 이벤트 및 시상 - 신청방법 : 새빛톡톡 및 방문 접수 		1인가구 정책 - 1인 가구 정책 버전 및 목표	사업안내 - 사업 안내 및 링크 연결	소통공간 - 1인가구 소통	기관안내 - 유관 기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여성정책과 (☎228-3706)
1인가구 정책 - 1인 가구 정책 버전 및 목표	사업안내 - 사업 안내 및 링크 연결	소통공간 - 1인가구 소통	기관안내 - 유관 기관 소개			

□ 가족여성회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용 대 상 : 관내 여성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 양성 평등 문화 확산(교육 및 캠페인) - 가족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관 연대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여성회관

○ 가족여성회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가족여성회관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	031-259-9800	

□ 여성문화공간-휴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용 대 상 : 관내 여성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건강·문화·교육·공동체 활동·심신상담 등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공간-휴

○ 여성문화공간-휴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 여성 문화공간-휴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 10 (권선동)	031-225-2541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용 대 상 : 관내 시민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팔달구 향교로 161 601~602호 (중동, 우림빌딩)	031-245-1310 031-245-1311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등)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인정받은 자 - 장애인활동지원 중복지원 불가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요양원 입소 등)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비용의 20% 본인부담) - 재가(방문요양, 주야간 등)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비용의 15% 본인부담) - 장기요양 등급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h>5등급</th> <th>인지지원</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95점이상</td> <td>75~94</td> <td>60~74</td> <td>51~59</td> <td>45~50</td> <td>45점미만</td> </tr> <tr> <td>상 태</td> <td>침대생활 (대소변도 도움)</td> <td>대부분의 행동에 도움</td> <td>실내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td> <td>실외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td> <td>치매특별등급으로 치매진단 받은 경증환자</td> <td>45점미만이라도 치매 확인된 사람</td> </tr> <tr> <td rowspan="2">이용</td> <td>시설</td> <td>○</td> <td colspan="3">보호자 유무 등 경우에 따라 가능</td> <td>X</td> </tr> <tr> <td>재가</td> <td>○</td> <td>○</td> <td>○</td> <td>○</td> <td>주야간보호</td> </tr> </tbody> </table> <p>• 장기요양인정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p>•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자 : 국민건강관리공단 직원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자녀집에서도 가능) 방문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 <p>•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p> <p>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p> <p>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p> <p>03 장기요양인정서 표본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p> <p>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p>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점 수	95점이상	75~94	60~74	51~59	45~50	45점미만	상 태	침대생활 (대소변도 도움)	대부분의 행동에 도움	실내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	실외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	치매특별등급으로 치매진단 받은 경증환자	45점미만이라도 치매 확인된 사람	이용	시설	○	보호자 유무 등 경우에 따라 가능			X	재가	○	○	○	○	주야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등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수원서부지사 (장안·권선) ☎ 031-240-4252 • 수원동부지사 (팔달·영통) ☎ 031-230-9257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점 수	95점이상	75~94	60~74	51~59	45~50	45점미만																															
상 태	침대생활 (대소변도 도움)	대부분의 행동에 도움	실내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	실외에서 보장구로 이동가능	치매특별등급으로 치매진단 받은 경증환자	45점미만이라도 치매 확인된 사람																															
이용	시설	○	보호자 유무 등 경우에 따라 가능			X																															
	재가	○	○	○	○	주야간보호																															

□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 결정)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 산정 • 지원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수행기관에서 상담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 지원내용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대상자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대상자 승인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우선순위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 지원내용 가사·일상생활지원, 신변·활동지원, 안부·안전 확인, 사례관리, 상담, 후원·결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수행기관에서 상담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기초연금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및 지원금액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th> <th>월 최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단독가구</td> <td>213만원</td> <td>334,810원</td> </tr> <tr> <td>부부가구</td> <td>340만8천원</td> <td>535,68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 분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월 최대금액	단독가구	213만원	334,810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535,6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65세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대상자 결정 (시 어르신돌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월 최대금액											
단독가구	213만원	334,810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535,680원											

□ 효도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가정을 이루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수원시 연속거주 지원내용 반기별 5만원 지급(가구당)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세대분리) 등 3세대 가정 구성요건 소멸된 경우 지급 중지 구비서류 : 신청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직계비속으로 실제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대상자 결정 (각 구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효사랑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85세 이상 어르신 중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자 - 단, 1년 이상 장기 출타자는 제외 지원내용 분기별 6만원 지급(개인당) ※ 만85세 생일이 되는 다음달부터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신분증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행정복지센터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대상자 결정 (각 구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60세 이상 일자리 희망자(공익활동은 65세 이상) • 지원내용 일자리 유형 및 참여자 수, 근로조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11~12월 • 수행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자 결정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 수원시니어클럽 (☎031-202-1435)
구분	계 (명)	사회활동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참여 자수	6,550	4,300	1,500	520	230		
주요 사업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지역아동센터 등 식사보조, 환경 정리 등	매장·사업단 활동·식품 제조 판매, 매장 운영 등	경비, 청소, 간병인 등		
근로 조건		월30시간 이상, 29만원 활동수당	월60시간, 월 최대 76만원 (연차수당 별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최저임금 이상	수요처와 연계 (근로계약서상 시간, 최저임금 이상)		
비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일부 60세)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수원시니어클럽	팔달구 수성로182번길 85 (화서동)	031-202-1435	
2	경기도실버자원봉사회	팔달구 화양로67번길 3 (화서동)	031-245-1515	
3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장안구 수성로340번길 30 (영화동)	031-257-1999	
4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권선구 구운로4번길 34 (구운동)	031-291-0849	
5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팔달구 수원천로 347 (북수동)	031-245-2386	
6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영통구 영통로 396 (영통동)	031-206-8858	
7	SK청של노인복지관	장안구 장안로 174 (정자동)	031-257-6811	
8	서호노인복지관	권선구 구운로4번길 34 (구운동)	031-291-0911	
9	버드내노인복지관	권선구 권선로 564번길 36 (세류동)	031-898-6544	
10	광고노인복지관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이의동)	031-8006-7400	
11	밤밭노인복지관	장안구 상률로 53 (울전동)	031-271-8859	
12	팔달노인복지관	팔달구 수원천로 343 (북수동)	031-248-3800	
13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반달로 45 (영통동)	031-201-8329	
14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 (우만동)	031-254-1992	

□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대학 운영 등)**

구 분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경로당별 회원 가입 후 이용) • 서비스 내용 - 민요, 요가, 노래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 - 지역내 환경지킴이, 안전한 등하곶길 만들기 등 사회공헌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주소지 경로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회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 내용 -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핵심지도자 교육, 노인지도자 대회 등) - 노인대학 운영 지원 (생활교육 및 건강교실 운영 등) - 활기넘치는 제2의 인생구현 지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건강여가교실, 한궁대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주소지 노인회 지회 	주소지 노인회 지회 -장안구 031-242-1377 -권선구 031-291-5617 -팔달구 031-245-2388 -영통구 031-206-0010

□ **노인복지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 6개소 • 이 용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 내용 - 노인 여가 · 건강 · 일자리 · 자원봉사 · 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관내 노인복지관 	관내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SK청솔노인복지관	장안구 장안로 174 (정자동)	031-257-6811	
밤밭노인복지관	장안구 상률로 53 (울전동)	031-271-8859	
서호노인복지관	권선구 구운로 4번길 34 (구운동)	031-291-0911	
버드내노인복지관	권선구 권선로 564번길 36 (세류동)	031-898-6544	
팔달노인복지관	팔달구 수원천로 343 (복수동)	031-248-3800	
광고노인복지관	본관)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 (이의동)	031-8006-7400	
	분관)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55(원천동)	031-8006-7440	

어르신 치매검진 등 건강 지원

사 업 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치매 검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검사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60세 이상으로 기존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875,896원 이하) 어르신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 가능 ※ 단, 진단검사의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 •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검사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검 사 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선별검사</td> <td>치매 선별 (인지선별검사)</td> <td>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사전 예약 필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진단검사</td> <td>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신경인지·일상생활척도 검사 등</td> <td>협약병원 검사비 (15만원 한도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감별검사</td> <td>혈액·간기능·신장기능·뇌영상 촬영 등</td> <td>협약병원 검사비 (종합병원급 이하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td> </tr> </tbody> </table>	검사종류	검 사 내 용	지 원 내 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 (인지선별검사)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사전 예약 필수)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신경인지·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협약병원 검사비 (15만원 한도내)	감별검사	혈액·간기능·신장기능·뇌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검사비 (종합병원급 이하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 해당 지역 보건소 장안 228-5952 권선 228-6798 팔달 228-7719 영통 228-8792
검사종류	검 사 내 용	지 원 내 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 (인지선별검사)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사전 예약 필수)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신경인지·일상생활척도 검사 등	협약병원 검사비 (15만원 한도내)													
감별검사	혈액·간기능·신장기능·뇌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검사비 (종합병원급 이하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존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875,896원 이하) 어르신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연간 36만원)내 실비 지급 • 구비서류 신분증, 대상자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상병코드 F00~03, G30, G301, G308, G309중 하나이상 포함)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실종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 지원내용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지급 ※ 무료, 소진 시 재발급 가능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부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해당 지역 보건소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보호대, 미끄럼방지 용품 등) 무료 제공 ※ 제공 품목은 지자체별 상이 • 구비서류 신분증, 처방전·상병코드 F00~03, G30, G301, G308, G309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해당 지역 보건소												

세 부 사 업

문 의

• 치매 예방관리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치매예방 교육</p>	<p>[대 상] • 지역 주민</p> <p>[지원내용] • 치매 예방 교육(3·3·3) 실시 • 치매 예방 운동법(체조 등) • 치매 인식개선 퀴즈 등</p> <p>[유의사항]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p>
<p>치매예방 교실</p>	<p>[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p> <p>[지원내용] • 참여인원 : 1교실당 최대 20명 • 운영회기 :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최소 8회기 운영) • 주요내용 - 치매예방 교육 콘텐츠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p> <p>[유의사항]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p>
<p>인지강화 교실</p>	<p>[대 상] • 치매 고위험군</p> <p>[지원내용] • 참여인원 : 1교실당 최대 20명 • 운영회기 : 회당 60분 이상, 주 1회 이상 운영(최소 8회기 운영) • 주요내용 - 치매예방 교육 콘텐츠 및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구성</p> <p>[유의사항]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p>

세 부 사 업

문 의

• 치매 환자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치매환자 쉼터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경증 치매환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또는 미이용자 - 장기요양 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정원 : 쉼터 반 당 최대인원 20명(1인당 최대 1년 이용) • 프로그램 운영(종이접기, 운동, 원예 등) - 인지재활 / 인지자극 / 정서지원 / 건강지원 / 특별프로그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가족교실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환자의 가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보호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가족지원 프로그램 '헤아림', '일상의 회복' '숨은 마음찾기' 등 가족교실 운영(1~10월)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자조모임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환자의 가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보호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가족 자조모임 - 월 1회 운영(2~10월) - 동반 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운영 - 가족카페 다과 제공, 치매 관련 정보제공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힐링 프로그램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환자의 가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함께 참여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힐링프로그램 진행(나들이, 원예 등)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음

사업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 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 개안수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개안수술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 원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개안수술</td> <td>- 공통: 1안당 150만원 내 지원(수술) 1안당 250만원 내 지원(안구내 주입술) - 관련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밀리아 등)의 경우, 검사 2회, 주사 2회 - 후발성 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치료비</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원 내 용	개안수술	- 공통: 1안당 150만원 내 지원(수술) 1안당 250만원 내 지원(안구내 주입술) - 관련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밀리아 등)의 경우, 검사 2회, 주사 2회 - 후발성 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치료비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구 분	지 원 내 용										
개안수술	- 공통: 1안당 150만원 내 지원(수술) 1안당 250만원 내 지원(안구내 주입술) - 관련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밀리아 등)의 경우, 검사 2회, 주사 2회 - 후발성 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치료비										
노인틀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완전틀니 : 65세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65세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7년에 1번) <table border="1"> <thead> <tr> <th>건강보험</th> <th>차상위</th> <th>의료급여1종</th> <th>의료급여2종</th> </tr> </thead> <tbody> <tr> <td>30%</td> <td>5~15%</td> <td>5%</td> <td>15%</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5~15%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 의료급여 : 치과 병·의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5~15%	5%	15%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1인당 평생 2개) <table border="1"> <thead> <tr> <th>건강보험</th> <th>차상위</th> <th>의료급여1종</th> <th>의료급여2종</th> </tr> </thead> <tbody> <tr> <td>30%</td> <td>10~20%</td> <td>10%</td> <td>20%</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10~20%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 의료급여 : 치과 병·의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10~20%	10%	20%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서비스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지원 	해당 지역 보건소 신청	노인의료 나눔재단 (☎02-711-6599)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접 종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폐렴구균</td> <td>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td> </tr> <tr> <td>인플루엔자</td> <td>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하반기)</td> </tr> </tbody> </table>	구 분	접 종 내 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하반기)	전국 위탁의료기관 (신분증 지참)	관할 보건소		
구 분	접 종 내 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하반기)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사 업 명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이용 유료(개별적으로 교통카드 충전 후 사용) - 철도요금 감면 ·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에 한하여 무료 이용 (단, 공항철도 직통은 제외) ※ 경기도 거주자 /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요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 노선 제외)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경기도내 농협 영업점(생신 당일 부터 신청 가능 ※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 신분증 필요 	농협 영업점 (☎1588-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새마을호 등 이용 시 신분증 	코레일 (☎1544-7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이용 시 신분증 	대한항공 (☎1588-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 	한국해안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 ※ 수원시(65세 이상 무료)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 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건강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지원기준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1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2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 득</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360만원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 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억 3,500만원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감률</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소득 36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 득	360만원 이하			재 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억 3,500만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 공단 신청 ※ 65세, 70세 도래되는 다음날부터 공단에서 자동 적용해줌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 득	360만원 이하																		
재 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억 3,500만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이동통신 통신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예외기준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 (☎114)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등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p>• 등록절차 : 공단은 장애정도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통지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158 884 1225 1644"> <tbody> <tr> <td>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td> <td>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td> <td>의료기관</td> </tr> <tr> <td>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td> <td>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td> <td>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장애심사, 결정 후 심사결과 통보</td> <td>국민연금공단</td> </tr> <tr> <td>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td> <td>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td> <td>동 행정복지센터</td> </tr> <tr> <td>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td> <td>동 행정복지센터</td> </tr> </tbody> </table> <p>• 등록장애인 복지서비스 : 별도</p>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심사, 결정 후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심사, 결정 후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연금 등 지원사업 신청절차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등 가능)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지출실태 확인서 등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확정,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 확인)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급여 제공 •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등 통해 급여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 초과 시 급여중지(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 선정기준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2.5%;">1인</th> <th style="width: 12.5%;">2인</th> <th style="width: 12.5%;">3인</th> <th style="width: 12.5%;">4인</th> <th style="width: 12.5%;">5인</th> </tr> </thead> <tbody> <tr> <td>'24년 기준 중위소득</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r> <tr> <td>차상위(중위 50%) ※ 차상위장애인 등</td> <td>1,114,222</td> <td>1,841,305</td> <td>2,357,328</td> <td>2,864,956</td> <td>3,347,867</td> </tr> </tbody> </table>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차상위(중위 50%) ※ 차상위장애인 등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가상담 → 구청 (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 (보장결정 요청) → 시청 (장애인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 (사회복지과)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차상위(중위 50%) ※ 차상위장애인 등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 장애인연금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p> <p>• 선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선정 기준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단독가구</td> <td>130만원 이하</td> <td></td> </tr> <tr> <td>부부가구</td> <td>208만원 이하</td> <td></td> </tr> </tbody> </table>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장애인연금(원)</th> <th rowspan="3">비고</th> </tr> <tr> <th colspan="2">기초급여</th> <th colspan="2">부가급여</th> </tr> <tr> <th>18-64세</th> <th>65세이상</th> <th>18-64세</th> <th>65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생계 / 의료 수급자</td> <td>단독</td> <td>334,810</td> <td rowspan="6">기초연금으로 전환</td> <td rowspan="2">90,000</td> <td rowspan="2">424,810</td> <td rowspan="6"></td> </tr> <tr> <td>부부</td> <td>535,680</td> </tr> <tr> <td rowspan="2">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td> <td>단독</td> <td>334,810</td> <td rowspan="2">80,000</td> <td rowspan="2">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td> <td rowspan="2"></td> </tr> <tr> <td>부부</td> <td>535,680</td> </tr> <tr> <td rowspan="2">시설 수급자</td> <td>단독</td> <td>334,810</td> <td rowspan="2">0</td> <td rowspan="2">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td> <td rowspan="2"></td> </tr> <tr> <td>부부</td> <td>535,680</td> </tr> <tr> <td rowspan="2">차상위 초과자</td> <td>단독</td> <td>334,810</td> <td rowspan="2">30,000</td> <td rowspan="2">50,000</td> <td rowspan="2"></td> </tr> <tr> <td>부부</td> <td>535,680</td> </tr> </tbody> </table> <p>※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지급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p> <p>•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등</p>		구 분	선정 기준액	비 고	단독가구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구 분	장애인연금(원)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생계 / 의료 수급자	단독	334,810	기초연금으로 전환	90,000	424,810		부부	535,680	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단독	334,810	80,000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부부	535,680	시설 수급자	단독	334,810	0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부부	535,680	차상위 초과자	단독	334,810	30,000	50,000		부부	535,680	<p>• 연중 (본인 친인척 등)</p> <p>•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분증 등) 및 초가상담</p> <p>→ 구청(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보장결정 요청)</p> <p>→ 시청(장애인등록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p> <p>→ 구청(사회복지과) 지원 등</p>	<p>•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p> <p>•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구 분	선정 기준액	비 고																																																									
단독가구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구 분	장애인연금(원)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생계 / 의료 수급자	단독	334,810	기초연금으로 전환	90,000	424,810																																																						
	부부	535,680																																																									
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단독	334,810		80,000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부부	535,680																																																									
시설 수급자	단독	334,810		0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부부	535,680																																																									
차상위 초과자	단독	334,810	30,000	50,000																																																							
	부부	535,680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th> <th rowspan="2">분</th> <th colspan="2">장 애 수 당(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장애수당</th> <th>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생계/ 의료 수급자</td> <td>단독</td> <td rowspan="2">60,000</td> <td>중증 220,000</td> <td rowspan="2"></td> </tr> <tr> <td>부부</td> <td>경증 110,000</td> </tr> <tr> <td rowspan="2">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td> <td>단독</td> <td rowspan="2">60,000</td> <td>중증 170,000</td> <td rowspan="2"></td> </tr> <tr> <td>부부</td> <td>경증 110,000</td> </tr> <tr> <td rowspan="2">시설 수급자</td> <td>단독</td> <td rowspan="2">30,000</td> <td>중증 90,000</td> <td rowspan="2"></td> </tr> <tr> <td>부부</td> <td>경증 30,000</td> </tr> <tr> <td rowspan="2">차상위 초과자</td> <td>단독</td> <td rowspan="2">해당 없음</td> <td>해당 없음</td> <td rowspan="2"></td> </tr> <tr> <td>부부</td> <td>해당 없음</td> </tr> </tbody> </table> <p>• 구비서류 : 신청서 등</p>		구	분	장 애 수 당(원)		비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생계/ 의료 수급자	단독	60,000	중증 220,000		부부	경증 110,000	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단독	60,000	중증 170,000		부부	경증 110,000	시설 수급자	단독	30,000	중증 90,000		부부	경증 30,000	차상위 초과자	단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분증 등) 및 초기상담 → 구청(사회복지과) 소득 및 재산 조사(보장결정 요청) → 시청(장애인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지원 등 → 구청(사회복지과)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분			장 애 수 당(원)			비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생계/ 의료 수급자	단독	60,000	중증 220,000																																			
	부부		경증 110,000																																			
주거 / 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단독	60,000	중증 170,000																																			
	부부		경증 110,000																																			
시설 수급자	단독	30,000	중증 90,000																																			
	부부		경증 30,000																																			
차상위 초과자	단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부		해당 없음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판정자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종합조사의뢰 (시군구)→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심사개최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able border="1"> <thead> <tr> <th>급여종류</th> <th>분 류</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활동보조 (시간당)</td> <td>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td> <td>16,150원 (가산수당 3,000원)</td> </tr> <tr> <td>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td> <td>24,220원, (가산수당 4,500원)</td> </tr> <tr> <td rowspan="2">방문목욕 (회당)</td> <td>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td> <td>84,670원</td> </tr> <tr> <td>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td> <td>76,340원</td> </tr> <tr> <td rowspan="3">방문간호 (회당)</td> <td>30분 미만</td> <td>40,760원</td> </tr> <tr> <td>30분 이상 ~ 60분 미만</td> <td>51,110원</td> </tr> <tr> <td>60분 이상</td> <td>61,490원</td> </tr> </tbody> </table>				급여종류	분 류	금 액	활동보조 (시간당)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방문목욕 (회당)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방문간호 (회당)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급여종류	분 류	금 액																											
활동보조 (시간당)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방문목욕 (회당)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방문간호 (회당)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의 월 한도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급여</th> <th>지원시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여 (1구간~15구간)</td> <td>971~7,754천원</td> <td>60시간~480시간</td> <td></td> </tr> <tr> <td rowspan="3">특별 지원 급여</td> <td>출 산</td> <td>1,294천원</td> <td>80시간 6개월</td> </tr> <tr> <td>자립준비</td> <td>330천원</td> <td>20시간 6개월</td> </tr> <tr> <td>보호자 일시부재</td> <td>330천원</td> <td>20시간 6개월 이내</td> </tr> <tr> <td>경기도 추가급여</td> <td>80~2,212천원</td> <td>5시간~137시간</td> <td></td> </tr> <tr> <td>수원시 추가급여</td> <td>323~1,453천원</td> <td>20시간~90시간</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급여	지원시간	비 고	기본급여 (1구간~15구간)	971~7,754천원	60시간~480시간		특별 지원 급여	출 산	1,294천원	80시간 6개월	자립준비	330천원	20시간 6개월	보호자 일시부재	330천원	20시간 6개월 이내	경기도 추가급여	80~2,212천원	5시간~137시간		수원시 추가급여	323~1,453천원	20시간~90시간			
구 분	지원급여	지원시간	비 고																										
기본급여 (1구간~15구간)	971~7,754천원	60시간~480시간																											
특별 지원 급여	출 산	1,294천원	80시간 6개월																										
	자립준비	330천원	20시간 6개월																										
	보호자 일시부재	330천원	20시간 6개월 이내																										
경기도 추가급여	80~2,212천원	5시간~137시간																											
수원시 추가급여	323~1,453천원	20시간~9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원급여 · 도 추가(가구환경, 사회생활, 특별지원) · 시 추가(사지마비·와상, 그 외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면제 (의료급여법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차상위 초과계층은 38,800원~최대 200,200원) 																													

○ 제공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이의동)	031-548-5612	
2	버드내노인복지관	권선구 권선로 564번길 36 (세류동)	031-547-6278	
3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팔달구 매산로 83, 5층 (매산로3가, 강산빌딩)	031-243-1731	
4	명은전문요양센터	장안구 장안로217번길 14, 121호 (정자동)	031-268-9139	
5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지부	장안구 송정로 90번길 3, 9층(정자동)	031-245-9989	
6	해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안구 율전로 92, 3층 (율전동, 뉴대명빌딩)	031-291-8555	
7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031-893-2188	
8	사회복지법인브솔복지재단	중부대로 293-3, B1층(원천동)	031-213-6111	
9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5호 (오목천동)	031-239-6393	
10	사단법인 나눔과실천	장안구 송정로 83, 상가동 128호 (송죽동, 수원로얄팰리스)	031-252-7044	
11	재단법인 꿈행복나눔재단	권선구 곡반정로 202(곡반정동)	031-225-1020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상시 보호 필요하다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 대상자 발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승인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제공기관을 통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제공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활동, 관람 및 자조활동 등) • 지원유형 - 월 66시간 바우처 지원 • 지원단가 - 기본단가 16,150원, 1인 서비스 및 그룹별(2~4인) 차등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시군구(대상자 결정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사단법인 해솔	영통구 영통로 509-1, 3층(영통동)	031-273-9777	
2	인영아동상담소	장안구 파장천로 136-8(파장동)	031-271-2019	
3	사단법인 해다운 복지협회 영통점	영통구 삼성로320번길 80, 3층(영통동)	031-273-7890	
4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권선구 매송고색로703, 4층(고색동)	031-291-1658	
5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장안구 천천로74번길 50, 1층(정자동)	031-546-0514	
6	꿈틀협동조합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90, 403호	031-298-0701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제공기관을 통한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 - 참여형 : 자조모임, 산책 걷기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탐방, 교육 등 - 창의형 : 음악, 미술활동, 창작성 만들기, 목공예 등 • 지원유형 - 기본형 : 월 132시간 바우처 지원 - 확장형 : 월 176시간 바우처 지원 • 지원단가 - 기본단가 16,150원, 1인 서비스 및 그룹별(1~3인) 차등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등→ 시군구(신청자 송부)→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시군구(대상자 결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사단법인 해솔	영통구 영통로 509-1(영통동, 평강빌딩 3층)	031-273-9777	
2	수원중앙복지재단	팔달구 행궁로 77(팔달로3가, 송산빌딩 6층)	031-221-8550	
3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	031-893-2100	
4	사단법인 해다운 복지협회	장안구 정조로1053번길 35, 3층(송죽동)	031-242-7890	
5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이의동)	031-548-5612	
6	인영아동상담소	장안구 파장천로 136-8(파장동)	031-271-2019	
7	사단법인 해다운 복지협회 영통점	영통구 삼성로320번길 80, 3층(영통동)	031-273-7890	
8	더열린숲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25, 02호(권선동)	031-257-7553	
9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장안구 천천로74번길 50, 노송관 1층(정자동, 동남보건대학교)	031-546-0514	
10	꿈틀그라운드	영통구 창룡대로 250, 2층 7호(이의동)	031-298-0701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 득 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바우처 지원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수급자(다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2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상위계층(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18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16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소 득 기 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 득 기 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장애 미등록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 득 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바우처 지원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수급자(다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5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상위계층(가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3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1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19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17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원내용</p> <p>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p>	소 득 기 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다형)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원	4만원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9만원	6만원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 득 기 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다형)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원	4만원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9만원	6만원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8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장애 미등록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본인 친인척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기준 확인 (시군구)→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달재활 · 언어발달 · 부모상담 제공기관

연번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비스 분야
1	수원 아동발달문화센터	장안구 경수대로 1022, 2층(파장동)	031-253-9098	발달
2	마음뜰clinic 운동발달센터	장안구 대평로 128, 4층 404호 (정자동, 파크프라자)	070-8833-2963	발달
3	김도영언어인지 발달상담센터	장안구 대평로90번길 19, 3층 324호 (정자동, 라이프스포츠 수원)	031-292-3188	발달
4	위드 가족심리지원센터	장안구 서부로 2161, 503호(울전동)	010-6748-2214	발달
5	지혜나무 심리상담센터	장안구 서부로 2197번길 47-1, 3층 (울전동)	031-8004-1909	발달
6	아이숲아동발달센터	장안구 송원로 83, 4층 403호 (조원동, 메가플러스3차)	031-248-5333	발달,언어
7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장안구 송정로 64, 2층(정자동)	031-246-3339	발달,언어, 부모
8	꿈나무 심리언어연구소	장안구 정조로 988, 212호 (조원동, 조원샤르망)	031-254-4888	발달,언어, 부모
9	동남보건대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노송관 1층(정자동)	031-249-6260	발달
10	수원아이 언어심리센터	장안구 화산로125번길 10, 3층 (천천동)	031-297-0701	발달,언어
11	한국아동청소년 발달센터(수원점)	권선구 경수대로 401, 2층 (권선동, KT권선동빌딩)	031-224-7456	발달,언어, 부모
12	하온심리상담센터	권선구 금곡로 205, 409호 (금곡동, 해피라움)	031-227-2248	발달,언어, 부모
13	(주)디디다	권선구 금곡로 206, 301-1/302호 (금곡동, 우성메디피아2차)	031-298-9120	발달,언어
14	한국덴버 아동발달센터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15, 531/532/533호(금곡동, 비즈웍스)	031-295-3538	발달,언어
15	서수원아동발달센터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20, 4층 403호(금곡동)	031-227-0707	발달,언어, 부모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비스 분야
16	루시드심리발달센터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9, 7층 701호(금곡동, MS메디컬스퀘어)	010-2765-6620	발달
17	굿컴퍼니	권선구 금호로23번길 21, 슬로피아 1/2/4층(금곡동)	031-291-2171	발달
18	우리아이 통합발달센터 권선점	권선구 동수원로 232, 3층 (권선동, 롯데마트권선점)	031-267-3533	발달
19	마음뜰클리닉(Clinic) 아동청소년발달센터	권선구 동수원로 242번길 6, 502/504호(권선동)	031-225-4023	발달,부모
20	공감심리언어센터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139, 2층 (곡반정동)	031-232-4023	발달,언어
21	지후아동발달센터	권선구 서부로 1632-6, 201호 (고색동)	031-291-1935	발달,언어, 부모
22	버드내아동발달센터	권선구 세류로 40, 3층(세류동)	031-235-1225	발달,언어
23	(주)일곱부설 행복나무 아동발달센터 수원점	권선구 수인로 296번길 62, 2층 (구운동)	031-892-9114	발달,언어
24	윤슬 아동청소년발달센터	권선구 장다리로 67, 501호 (세류동, 평화빌딩)	070-8263-8275	발달,언어
25	호매실 아동발달심리센터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24-61, 501/502호(호매실동, 금호프라자)	031-295-8864	발달,언어
26	hdm심리상담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90, 307호 (호매실동)	031-292-7553	발달,언어, 부모
27	꿈틀협동조합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90, 401/403호(호매실동, JD타워)	031-298-0701	발달,언어
28	경기아동 발달센터(수원점)	권선구 효원로 194, 2층 (권선동, 로얄빌리지)	010-9502-6445	발달
29	미쁨아동발달센터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17, 3층 306호(화서동, 그린프라자)	010-5765-0188	발달,언어
30	김희영아동발달센터	팔달구 아주로 9, 601호 (우만동, 용성빌딩)	031-211-9055	발달,언어, 부모
31	화서썬 아동청소년발달센터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7, 4층(화서동)	031-227-0082	발달,언어
32	라온아동발달센터	팔달구 중부대로 110, 2층 204B/ 205호(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	070-8242-7881	발달
33	수원아동발달센터	팔달구 팔달로 53, 2층 214호 (고등동, 고등더퍼스트)	031-241-3599	발달,언어
34	꿈나무 인지언어연구소	팔달구 행궁로 77, 2층 202호 (팔달로3가, 송산빌딩)	031-254-4888	발달,언어, 부모
35	고은소리 음악치료센터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어뮤즈스퀘어 B2층 178호(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	0507- 1354-6559	발달
36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영통구 대학2로 41(이의동)	031-212-7255	발달
37	송(Song) 아동발달센터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10, 2층 203호 (이의동, 성희프라자)	031-212-2568	발달,언어
38	광교아동발달센터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18, 402호 (이의동, 광교평은플라자)	031-212-2988	발달,언어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비스 분야
39	주식회사 꿈자라다(영통점)	영통구 반달로 35번길 30, 344/345/ 346호 (영통동, 영통역 아이파크)	031-204-1442	발달
40	해담심리 언어발달센터 2호점	영통구 반달로 7번길 6, 4층 409/410호 (영통동, 센타프라자)	031-203-1025	발달
41	아이원언어발달센터	영통구 봉영로 1612, 6층 603/606호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031-204-3538	발달,부모
42	아이조은 아동상담센터	영통구 봉영로 1767, 401/402호 (영통동, 한솔프라자)	031-203-5275	발달
43	마음샘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8-9, 5층 (영통동, 백림빌딩)	031-203-0392	발달,부모
44	이안아동발달연구소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6, 310호 (이의동, 센트럴프라자)	031-213-6644	발달,언어
45	플랜두 아동발달센터	영통구 영통로 237, 110/111호(신동,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영통)	031-202-9989	발달,언어
46	우리아이 통합발달센터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17, 4층 (영통동, ASK빌딩)	031-205-5275	발달
47	아주청각언어센터	영통구 월드컵로 185, 304/305호 (원천동)	031-211-4578	발달,언어
48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릉대로 255(이의동)	031-548-5614	발달
49	해담심리 언어발달센터	영통구 청명남로 21, 709/710호 (영통동, 아셈프라자)	031-203-1020	발달
50	하나애	영통구 태장로54번길 92, 406호 (망포동, 진성프라자)	031-204-7701	발달,언어
51	행복한우리 심리상담센터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804호(하동)	031-212-9959	부모

□ 장애인아 가족양육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만 18세 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이용요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본인 부담금(시간당 4,850원) 납부 시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지원시간 -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월 140시간 이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기준 확인 (시군구)→대상자 결정 및 통지 →이용요금 지원(경기도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세 부 사 업			문 의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에 따른 42종 품목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지원주기 : 각 품목별 내구연한 확인 ※ 당해연도에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맞춤형 상담 및 평가 (재활공학센터)→보조기기교부(업체)→교부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 									
도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인기준 3,772천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품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과 국비 교부 품목 제외한 보조기기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15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1품목 지원 - 지원주기 : 2년(격년으로 지원) ※ 당해연도에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맞춤형 상담 및 평가 (재활공학센터)→보조기기교부(업체)→교부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 									
시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기준 4,715천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은 제외) - 지원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지원대상</th> <th>지원금액</th> <th>지원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수급자 및 차상위계층</td> <td>20만원</td> <td>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td> </tr> <tr> <td>중위소득 100% 이하</td> <td>10만원</td> <td>1회</td> </tr> </tbody> </table> ※ 긴급사유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 지원대상자 경합 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만원	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등→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 및 적격여부 통지(시군구)→보조기기수리(업체)→수리 확인 및 비용지급(시군구)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만원	1회 (긴급사유 해당 시, 1회 추가)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원	1회									

○ 보조기기 수리업체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지정기간
1	대길케어	장안구 월드컵로 423(연무동)	031-252-9337	2023. 1. ~ 2025. 12.
2	부르미	권선구 서호로 135-10, 102호(서둔동)	010-6344-3600	
3	천수기업	권선구 정조로 195번길 10-14, 1층 (권선동)	010-3586-4081	
4	에이원케어 메디칼	권선구 일월천로 15번길 14-13(구운동)	031-278-8275	
5	일신케어	권선구 구운로 45번길 27(구운동)	010-3534-9337	
6	자립원	팔달구 세지로 399번길 94-2(우만동)	010-6755-8855	
7	(주)힐링산업	팔달구 정조로 781, 3103호(팔달로 2가)	031-216-8661	
8	(주)수원보장구 수리센터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104호 (우만동, 우만주공상가)	031-231-2000	
9	스위티즈	영통구 삼성로 253, 1동 1423호 (원천동, 영통지식산업센터)	010-5152-5322	

□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p>• 대 상</p> <p>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p> <p>※ 신청 제한 대상자</p> <p>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p> <p>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p> <p>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p> <p>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65세 이상자 중 3년간 연속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p>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등급외 자는 신청 가능)</p> <p>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p> <p>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p>		<p>• 전년도 11~12월</p> <p>•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 신청</p>	<p>• 장애인일자리 상담안내</p> <p>(☎228-2208, 2357, 2217)</p>																												
<p>• 지원내용</p> <p>일자리 유형 및 참여자 수, 근로조건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계 (명)</th> <th colspan="2">일반형 일자리(시 직영)</th> <th colspan="2">복지 일자리</th> </tr> <tr> <th>전일제</th> <th>시간제</th> <th>참여형 (위탁)</th> <th>연계형 (시 직영)</th> </tr> </thead> <tbody> <tr> <td>참여자수</td> <td>248</td> <td>78</td> <td>40</td> <td>110</td> <td>20</td> </tr> <tr> <td>주요사업</td> <td></td> <td>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환경정리 등</td> <td>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환경정리 등</td> <td>급식지원, 문화예술, 단순업무지원 등</td> <td>급식지원, 사서보조, 카페보조 등</td> </tr> <tr> <td>근로조건</td> <td></td> <td>주 5일 40시간, 2,060,740원</td> <td>주 5일 20시간, 1,030,370원</td> <td>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52,160원</td> <td>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52,16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명)	일반형 일자리(시 직영)		복지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위탁)	연계형 (시 직영)	참여자수	248	78	40	110	20	주요사업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환경정리 등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환경정리 등	급식지원, 문화예술, 단순업무지원 등	급식지원, 사서보조, 카페보조 등	근로조건		주 5일 40시간, 2,060,740원	주 5일 20시간, 1,030,370원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52,160원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52,160원
구분	계 (명)	일반형 일자리(시 직영)				복지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위탁)	연계형 (시 직영)																										
참여자수	248	78	40	110	20																										
주요사업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환경정리 등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환경정리 등	급식지원, 문화예술, 단순업무지원 등	급식지원, 사서보조, 카페보조 등																										
근로조건		주 5일 40시간, 2,060,740원	주 5일 20시간, 1,030,370원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52,160원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52,160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참여형) 수행기관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031-257-3577	
2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 (이의동)	031-548-5699	
3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031-893-2172	
4	다드림사회적일자리 교육센터	권선구 호매실로 90번길 24 프리마비즈타워 503 (호매실동)	010-8289-3544	

□ 장애인복지관 운영

대상 및 주요사업	이용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 2개소 • 이 용 대 상 : 수원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영통구 창룡대로 255 (이의동)	031-548-5600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031-893-2177	

아이행복, 부모행복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재원중인 0~1세(0~23개월) 아동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등 • 보장절차 : 처리기한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함)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조사 : 24개월 미만 전 아동 요건 충족 여부 조사 실시 - 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 제공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차감 지급)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지급)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가상담 → 구청 (가정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 구청 (가정복지과) 급여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 분</th> <th rowspan="2" style="width: 15%;">부모급여(현금)</th> <th colspan="2" style="width: 70%;">부모급여(바우처)</th> </tr> <tr> <th style="width: 25%;">부모보육료</th> <th style="width: 45%;">종일제 아이돌봄</th> </tr> </thead> <tbody> <tr> <td>0세(0세반)</td> <td>100만원</td> <td>54만원</td> <td rowspan="2">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200시간 지원)</td> </tr> <tr> <td>1세(0세반) (1세반)</td> <td>50만원</td> <td>54만원 47.5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부모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0세(0세반)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200시간 지원)	1세(0세반) (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		
구 분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부모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0세(0세반)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200시간 지원)												
1세(0세반) (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													

□ 가정양육수당(장애아양육수당 포함)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보장절차 : 처리기한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함)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조사 : 양육수당 지원 자격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아동은 양육수당 중복 지원 불가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 제공(가정양육수당 또는 장애아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지급)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가상담 → 구청 (가정 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 구청 (가정 복지과) 급여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구 분	지 원 기 준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아동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 다음날 자격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만86개월 미만 영유아 -0~11개월 : 20만원 -12~23개월 : 15만원 -24~85개월 : 10만원 	
	장애아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개월미만 : 20만원 -36~85개월 : 10만원 	

□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경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이용 (단,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보장절차 : 처리기한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함) -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종일형 자격 사유별 제출 서류(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조사 : 2013년부터 전(全)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하나, 2016.07.01.자 맞춤형보육(영아0~2세/20.3월부터 기본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연장보육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보육 자격 여부 확인조사 실시 - 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급여 제공 (보육료, 다문화, 장애아, 유아학비, 기본보육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가상담 → 구청 (가정 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 → 구청 (가정 복지과) 급여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기 준	지원 방법 등	
보 육 료	만0세~5세보육료 (다문화보육료- '17.1.1이후 출생 포함)	• 0세('23.1.1이후 출생) : 540천원 • 1세('22.1.1~'22.12.31) : 475천원 • 2세('21.1.1~'21.12.31) : 394천원 • 3세~5세('20.1.1~'18.12.31) /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17.1.1~'17.12.31) : 280천원	매월 (아이 행복 카드 결재)
	장애아 보육료	• 장애아반 편성된 아동 : 587천원 • 12세('10.1.1이후 출생)의 장애 아동 ※ 장애인등록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5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8세이하) 중 1부	
	야간연장 보육료 (19:30~24:00)	• 일반아동 : 시간당 4,000원, 월 최대 60시간(한도액 24만원) • 장애아동 : 시간당 5,000원, 월 최대 60시간(한도액 30만원)	
	방과후 보육료	• 12세('10.1.1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1일 4시간 이상) 시 -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동 293,000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 법정(수급자,한부모,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등)	• 만3세 : 89천원(민간) 92천원(가정) • 만4~5세 : 66천원(민간) 92천원(가정)	
	누리차액 보육료	• 민간 3세 : 월 89천원 • 민간 4,5세 : 월 66천원 • 가정 3~5세 : 월 92천원	
	유아학비 시간연장보육료	• 유치원 아동 중 어린이집 시간연장 이용 아동 시간당 3,200원(전년대비 100원인상), 월 최대 60시간	
기관 보육료 (만0세~2세) ※ 원에서 매월 말일까지 전월 이용현황 확정 → 원에서 매달 3일까지 생성내역 확인 후 신청 → 시군구 지급승인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원으로 지원 요건(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등) 충족 시 지원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 일할계산 / 월 1일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 / 출석일수 0일인 경우 미지원) 0세('23.1.1이후 출생) : 629천원 1세('22.1.1~'22.12.31) : 342천원 2세('21.1.1~'21.12.31) : 232천원 장애아 : 686천원	매월 11일 경	
보육경비지원(입소료 등) ※법정저소득아동,장애아동, 다문화아동	•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가방 등) : 100천원 • 현장학습비(수련회비, 견학비 등) : 100천원	연1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사업 운영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p>○ 다함께돌봄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운영시간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20개소 운영 ※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2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공동주택건축허가)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 - 월~금(학기중 11시~20시, 방학중 9시~20시) - 이 용 료 : 없음(단, 급·간식비 이용자 부담)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방과 후 상시 및 일시 돌봄 ▶ 숙제지도 및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 - 시설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66㎡이상 전용면적(아동 1인당 3.3㎡이상, 20명 확보) - 인력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센터장1, 돌봄교사1, 시간제교사1)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청 아동돌봄과 (☎228-2960 2869 2303) 												
<p>○ 학교돌봄터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 운영시간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1개소(3개 교실) 운영 <table border="1" data-bbox="150 1541 1225 1697"> <thead> <tr> <th>시 설 명</th> <th>소 재 지</th> <th>면적 (㎡)</th> <th>정원 (명)</th> <th>전화번호</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td> <td>팔달구 팔달로110번길 26 (고등동, 수원초등학교)</td> <td>194</td> <td>57</td> <td>548-4979</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학기중 10시~20시, 방학중 9시~20시) - 이 용 료 : 없음(단, 급·간식비 이용자 부담) - 주요내용 : 정기, 일시돌봄, 급·간식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시설면적 : 1교실당 면적 64.8㎡ - 인력구성 : 7명[센터장 1, (8시간)돌봄교사 3, (6시간)돌봄교사 3]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	정원 (명)	전화번호	비고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팔달구 팔달로110번길 26 (고등동, 수원초등학교)	194	57	548-4979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	정원 (명)	전화번호	비고								
수원시-수원초 다함께학교돌봄터	팔달구 팔달로110번길 26 (고등동, 수원초등학교)	194	57	548-4979									

□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p>•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긴급복지지원 등의 아동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받는 자 · 만성질환자 ·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 경감받는 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받는 자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p>•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가정 소득 및 가정환경 등 자격조사 서류 등</p>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아동 : 조, 중,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지원 - 취 학 아 동 : 조, 석식 연중 지원(지자체) 중식 지원(학기중 → 교육청, 방학중 → 지자체) 		<p>• 연중 (본인 친인척 등)</p> <p>•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중·고·대 신청자격 등 조사</p> <p>→ 구청 (가정 복지과) 동별 취합 후 및 심의 의뢰</p> <p>→ 시청 (아동 돌봄과) 결정 및 통지</p> <p>→ 구청 (가정 복지과) 급식 실시 등</p>	<p>•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p> <p>•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p>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지역 아동센터	<p>• 지역아동센터 시설 입소 아동</p> <p>⇒ 교육급여대상 가정아동,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 아동, 장애인가정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자녀가정 아동 등</p>			<p>1식 / 9,000원</p> <p>※ 24. 1. 1. 8,000원 → 9,000원으로 인상</p>
급식 전자카드 (G-dream 카드)	<p>•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p> <p>⇒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긴급복지지원대상 아동, 보호자의 부재·양육능력 미약, 장애인·맞벌이가정 아동(중위소득 52%이하) 등 *4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2,979,555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05,891원 지역가입자 39,712원</p>			
학교 급식소	<p>• 결식 우려가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p>	<p>학교급식비 (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중식)</p>		
<p>- 급식 전달방법 :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학교</p>				

□ 청소년증 발급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청소년복지 지원법 : 9세 이상 ~ - 법률적 청소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신 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비교통), 확대형(교통)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진(3.5cmX4.5cm), 선불형 교통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청소년증 사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본인 친인척 등)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신청 (신분증 등 및 초·중·고등학교 입학 전송 →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제작-3주 소요) → 구청 (가정 복지과) 청소년증 발급(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내·외국인 함께하는 모두의 도시[다(多) 어울림 공동체]

□ 거주 이주민 시설 운영(참여형)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td> <td> <p>[대 상] • 이주배경 청소년 (9세~24세)</p> <p>[주요사업] • 육구사정 및 생활상담, 조기적응 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한국어 교육, 전문상담실 운영, 동아리 활동, 문화여가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자원관리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 247-1324</p> </td> </tr> <tr> <td>다문화 가족지원 센터</td> <td> <p>[대 상]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p> <p>[주요사업] • 가족사업 및 상담, 성평등 및 인권, 사회통합, 홍보 및 외부자원연계, 교류 소통공간 운영, 방문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서포터즈사업 등</p> <p>[시설현황] • 장안구 송원로 63 (송죽동, 신성빌딩 3층) / ☎ 257-8504</p> </td> </tr> <tr> <td>외국인 복지센터</td> <td> <p>[대 상]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p> <p>[주요사업] • 다문화 한가족축제, 세계문화체험, 재수원교민회, 상담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통역지원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무료진료 및 이미용 지원사업, 홍보 사업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중부대로 43, 7~8층(지동, 실로암메디컬빌딩) / ☎ 223-0075</p>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p>[대 상] • 이주배경 청소년 (9세~24세)</p> <p>[주요사업] • 육구사정 및 생활상담, 조기적응 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한국어 교육, 전문상담실 운영, 동아리 활동, 문화여가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자원관리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 247-1324</p>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p>[대 상]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p> <p>[주요사업] • 가족사업 및 상담, 성평등 및 인권, 사회통합, 홍보 및 외부자원연계, 교류 소통공간 운영, 방문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서포터즈사업 등</p> <p>[시설현황] • 장안구 송원로 63 (송죽동, 신성빌딩 3층) / ☎ 257-8504</p>	외국인 복지센터	<p>[대 상]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p> <p>[주요사업] • 다문화 한가족축제, 세계문화체험, 재수원교민회, 상담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통역지원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무료진료 및 이미용 지원사업, 홍보 사업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중부대로 43, 7~8층(지동, 실로암메디컬빌딩) / ☎ 223-0075</p>	<p>• 해당 시설</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p>[대 상] • 이주배경 청소년 (9세~24세)</p> <p>[주요사업] • 육구사정 및 생활상담, 조기적응 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한국어 교육, 전문상담실 운영, 동아리 활동, 문화여가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지역조직화사업, 자원관리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 ☎ 247-1324</p>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p>[대 상]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p> <p>[주요사업] • 가족사업 및 상담, 성평등 및 인권, 사회통합, 홍보 및 외부자원연계, 교류 소통공간 운영, 방문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서포터즈사업 등</p> <p>[시설현황] • 장안구 송원로 63 (송죽동, 신성빌딩 3층) / ☎ 257-8504</p>									
외국인 복지센터	<p>[대 상]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p> <p>[주요사업] • 다문화 한가족축제, 세계문화체험, 재수원교민회, 상담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통역지원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무료진료 및 이미용 지원사업, 홍보 사업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중부대로 43, 7~8층(지동, 실로암메디컬빌딩) / ☎ 223-0075</p>									

□ 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및 국내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d> </tr> <tr> <td>결혼 이민자 취업교육</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이수자 중 결혼이민자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기초 소양교육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및 직장내 대화기법, 직장인의 자세, 이미지메이킹 등 - 전문 자격 취득과정 : 전문가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등 • 일자리 연계 : 교육생 구직표 작성 및 일자리 정보망 등록, 취업연계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수원YWCA </td> </tr> <tr> <td>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자녀(만 4~11세) 및 초등학교 재학 중도입국자녀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국어 학습교육 중 1과목 선택 •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정보지 제공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대교 </td> </tr> <tr> <td>다문화 가족 신문구독 지원</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등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회(1일, 16일) 다문화 신문 보급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다문화뉴스, 한국다문화뉴스 </td> </tr> <tr> <td>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모임 6개 내외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임산부 및 육아 돌봄,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 • 요리, 체육, 문화체험 활동, 자원봉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등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및 국내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이수자 중 결혼이민자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기초 소양교육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및 직장내 대화기법, 직장인의 자세, 이미지메이킹 등 - 전문 자격 취득과정 : 전문가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등 • 일자리 연계 : 교육생 구직표 작성 및 일자리 정보망 등록, 취업연계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수원YWCA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자녀(만 4~11세) 및 초등학교 재학 중도입국자녀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국어 학습교육 중 1과목 선택 •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정보지 제공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대교 	다문화 가족 신문구독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등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회(1일, 16일) 다문화 신문 보급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다문화뉴스, 한국다문화뉴스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모임 6개 내외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임산부 및 육아 돌봄,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 • 요리, 체육, 문화체험 활동, 자원봉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등 	<p>• 해당 시설</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및 국내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이수자 중 결혼이민자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기초 소양교육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및 직장내 대화기법, 직장인의 자세, 이미지메이킹 등 - 전문 자격 취득과정 : 전문가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등 • 일자리 연계 : 교육생 구직표 작성 및 일자리 정보망 등록, 취업연계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수원YWCA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자녀(만 4~11세) 및 초등학교 재학 중도입국자녀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국어 학습교육 중 1과목 선택 • 주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정보지 제공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대교 													
다문화 가족 신문구독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등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회(1일, 16일) 다문화 신문 보급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다문화뉴스, 한국다문화뉴스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모임 6개 내외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임산부 및 육아 돌봄,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 • 요리, 체육, 문화체험 활동, 자원봉사,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등 													

□ 거주 외국인 지원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p>• 해당 시설</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거주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재산 기준(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 준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639</td> </tr> </tbody> </table>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639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639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713,100</td> <td>1,178,400</td> <td>1,508,600</td> <td>1,833,500</td> <td>2,142,600</td> <td>2,437,8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0천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0천원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p>거주 외국인 생활안전 교육 (온라인)</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p>[주요사업] 생활법률, 교통안전, 환경보호, 아동학대, 다문화인식개선(5개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시 구제방안, 스토크 예방, 교통안전 대응, 아동학대 신고(4개 언어),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안내 등 영상 제공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소(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p>거주 외국인 생활안내서 (전자책)</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 등 (제작언어 : 한국어 기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현황 및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법규 등 일상생활 안내 · 유용한 전화번호,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기관, 단체 및 사업 안내 등 <p>[수행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유관기관 등 															

세 부 사 업

문 의

• 지원사업

• 해당 시설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p>	<p>[대 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일반시민 등</p> <p>[지원내용] · 의식행사, 경연대회, 문화공연, 시상 -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 5개팀 -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 5개팀 - (내·외국인) 함께하는 소통 문화공연 : 3개팀</p> <p>[수행기관] · 사전 홍보 예정</p>
<p>다문화 한가족축제</p>	<p>[대 상] · 외국인주민 및 수원시민</p> <p>[주요사업] · 세계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하) · 다문화특별 퍼포먼스, 상설 행사 (외국인지원코너 운영 등) · 한국전통의상 및 세계민속의상패션쇼, 세계음식·문화 체험 · 특집공개방송 (외국인 민속공연, 퓨전공연, 초대가수 등)</p> <p>[수행기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p>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 보건소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진 료</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의 시민 <p>[진료실 운영]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질환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 한방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통, 좌골신경통, 근육통, 오십견 등 진맥, 침, 투약, 기본 한방진료 • 물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제 운영으로 사전 예약 필수 <p>[진 료 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검사 및 진료 내용에 따라 비용 부담 • 무료 : 의료급여 수급자, 1~3급 장애인,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 무료 대상자 증명서류 필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생애 전환기 건강검진</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p>[검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검사, 시력·청력 검사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2년 주기)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70세 • 생활습관 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p>[지원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최대 20만원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결과지(심화평가 권고)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검사결과통보서, 통장사본(법적보호자)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진 료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의 시민 <p>[진료실 운영]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질환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 한방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통, 좌골신경통, 근육통, 오십견 등 진맥, 침, 투약, 기본 한방진료 • 물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제 운영으로 사전 예약 필수 <p>[진 료 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검사 및 진료 내용에 따라 비용 부담 • 무료 : 의료급여 수급자, 1~3급 장애인,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 무료 대상자 증명서류 필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p>[검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검사, 시력·청력 검사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2년 주기)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70세 • 생활습관 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p>[지원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최대 20만원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결과지(심화평가 권고)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검사결과통보서, 통장사본(법적보호자) 	<p>• 관할 시군구 보건소</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진 료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의 시민 <p>[진료실 운영]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과질환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 한방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통, 좌골신경통, 근육통, 오십견 등 진맥, 침, 투약, 기본 한방진료 • 물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제 운영으로 사전 예약 필수 <p>[진 료 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검사 및 진료 내용에 따라 비용 부담 • 무료 : 의료급여 수급자, 1~3급 장애인,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 무료 대상자 증명서류 필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p>[검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검사, 시력·청력 검사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 66세 이상(2년 주기)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70세 • 생활습관 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p>[지원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최대 20만원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결과지(심화평가 권고)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검사결과통보서, 통장사본(법적보호자)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아동 담당의 의료지원</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6세~12세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척추 및 근골격·구강·시력·비염·비만 및 관련 질환 아동 보호자,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장 등 추천 수원시 아동의료지원 운영위원회 심의·등록된 아동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의료기관에 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지원 : 1년 / 4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7만원 정액 지원 - 치료비 지원 : 아동 담당의 추천 및 치료 심의 대상 아동 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검사, 치료, 수술, 보장구, 약제비 등 <p>[지정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개소(지정 안경업소 21개소) / 수원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td> </tr> <tr> <td>영양 플러스 사업</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기준 : 수원시 해당구 거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3인가구의 경우 3,771,725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134,671원, 지역가입자 80,190원 대상기준 : 영유아(66개월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건강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영양 교육 및 상담(월 1회),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 영양 보충식품 지원(월 2회)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산모수첩 등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6세~12세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척추 및 근골격·구강·시력·비염·비만 및 관련 질환 아동 보호자,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장 등 추천 수원시 아동의료지원 운영위원회 심의·등록된 아동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의료기관에 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지원 : 1년 / 4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7만원 정액 지원 - 치료비 지원 : 아동 담당의 추천 및 치료 심의 대상 아동 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검사, 치료, 수술, 보장구, 약제비 등 <p>[지정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개소(지정 안경업소 21개소) / 수원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영양 플러스 사업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기준 : 수원시 해당구 거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3인가구의 경우 3,771,725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134,671원, 지역가입자 80,190원 대상기준 : 영유아(66개월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건강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영양 교육 및 상담(월 1회),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 영양 보충식품 지원(월 2회)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산모수첩 등 	<p>• 관할 시군구 보건소</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6세~12세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p>[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척추 및 근골격·구강·시력·비염·비만 및 관련 질환 아동 보호자,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장 등 추천 수원시 아동의료지원 운영위원회 심의·등록된 아동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의료기관에 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지원 : 1년 / 4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7만원 정액 지원 - 치료비 지원 : 아동 담당의 추천 및 치료 심의 대상 아동 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검사, 치료, 수술, 보장구, 약제비 등 <p>[지정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개소(지정 안경업소 21개소) / 수원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영양 플러스 사업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기준 : 수원시 해당구 거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3인가구의 경우 3,771,725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134,671원, 지역가입자 80,190원 대상기준 : 영유아(66개월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건강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영양 교육 및 상담(월 1회),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 영양 보충식품 지원(월 2회)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산모수첩 등 							

□ 모자보건사업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 관할 시군구 보건소</p>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6개월 이상 여성기준, 경기도에 거주 조건 충족) - 전환형 : 기준 중위소득 180%(3인가구의 경우 8,486,382원) 이하 - 경기형 : 기준 중위소득 180%(3인가구의 경우 8,486,382원) 초과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외수정(신선, 동결)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44세 이하 - 신선배아(1~9회) 110만원, 동결배아(1~7회) 50만원, 인공수정(1~5회) 30만원 - 만45세 이상 - 신선배아(1~9회) 90만원, 동결배아(1~7회) 40만원, 인공수정(1~5회) 20만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등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임산부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지원에 대한 제공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통합신청 • 제공서비스 : 총 12종(현물서비스 택배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물서비스(5종)</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기타서비스(7종)</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엽사제 - 철분제 - 임신축하물품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주차증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치료비 - 임신·출산치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치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 맘편한 KTX - SRT 임산부 할인 </td> </tr> </table> <p>[신청방법 및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 임신확인서, 신분증 등 		현물서비스(5종)	기타서비스(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엽사제 - 철분제 - 임신축하물품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주차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치료비 - 임신·출산치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치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 맘편한 KTX - SRT 임산부 할인 			
현물서비스(5종)	기타서비스(7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엽사제 - 철분제 - 임신축하물품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주차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치료비 - 임신·출산치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치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 맘편한 KTX - SRT 임산부 할인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p>[대 상] 소득수준 및 거주기간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수원시에 출생 등록하고, 12개월 이내 신청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p>[지원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신청자</td> <td style="width: 25%;">행정복지센터</td> <td style="width: 25%;">보건소</td> <td style="width: 25%;">경기지역화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등록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및 자격 확인 • 발급대상자 등록 • 신청 공문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승인 • 예산 집행 및 관리 • 실적관리 및 홍보 • 예탁금 관리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카드 발송 • 지역화폐 관리 포탈 운영 </td> </tr> </table>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경기지역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등록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및 자격 확인 • 발급대상자 등록 • 신청 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승인 • 예산 집행 및 관리 • 실적관리 및 홍보 • 예탁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카드 발송 • 지역화폐 관리 포탈 운영
신청자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경기지역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등록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및 자격 확인 • 발급대상자 등록 • 신청 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승인 • 예산 집행 및 관리 • 실적관리 및 홍보 • 예탁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카드 발송 • 지역화폐 관리 포탈 운영 						

세 부 사 업

문 의

• 지원사업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 상] • 관내 거주 임신부					
	구 분	대 상		비고		
	국가 지원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경기도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산모			
	※ 2024년부터 경기도 예외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150%(3인가구의 경우 7,071,985원) 초과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수원시 예외 지원 종료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 5개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 •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및 제공인력 수	서비스기간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중증장애산모+쌍태아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삼태아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인	시스템 입력	통 지			
신청서, 소득확인 서류 등 제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접수 즉시 확인내역 '행복e음'에 입력	대상자 선정결과를 결정·통지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등						

세 부 사 업		문 의
• 지원사업		•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받는 자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지원(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최대 300만원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등록 산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소 시 우울선별 검사 및 상담 • 10점 이상의 고위험군 산모에게 수원시 성인정신보건센터 연계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등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3인가구의 경우 3,771,725원)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8만원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신청 자격(수급자 등) 증명서 등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정액 10만원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신청 자격(수급자 등) 증명서 등 	
유축기 대여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거주자 중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기간 : 1개월(30일)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 (선천성이상아) Q코드 진단, 1년 4개월 이내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한도 300~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미숙아 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p> </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확진 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보청기 지원</p> </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확진 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p>보청기 지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p>• 관할 시군구 보건소</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검사비용 지원(최대 2회) • 확진 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p>보청기 지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p>성인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p> </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5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폐암 - '21.6.30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 후 수검일 기준 만 2년이내 5대암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21.6.30 이전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2024.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2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td> </tr> <tr> <td> <p>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가입자) ※ 당연 선정대상</p> </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악성신생물, 제자리암종 등) ※ 원발성암 - 전이된 암이 아닌 처음 발생한 암 ※ 원발성 암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전이암 지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3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td> </tr> <tr> <td> <p>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p> </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암환자(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18세 미만 중 소득·재산기준 이하인 환자 (소득기준) <p>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body> <tr> <td>1인 : 2,674,134</td> <td>2인 : 4,419,131</td> <td>3인 : 5,657,588</td> </tr> <tr> <td>4인 : 6,875,896</td> <td>5인 : 8,034,882</td> <td>6인 : 9,142,043</td> </tr> </tbody> </table> <p>(재산기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단위 : 원)</p> <table border="1"> <tbody> <tr> <td>1인 : 361,127,914</td> <td>2인 : 402,974,388</td> <td>3인 : 432,673,597</td> </tr> <tr> <td>4인 : 461,889,568</td> <td>5인 : 489,683,022</td> <td>6인 : 516,233,669</td> </tr> </tbody> </table>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최대 3,000만원 • 위 사항을 제외한 암 최대 2,000만원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 연월일, 최종 진단 필수 기재) • 보건소 방문 신청 전 유선 문의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성인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5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폐암 - '21.6.30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 후 수검일 기준 만 2년이내 5대암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21.6.30 이전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2024.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2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p>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가입자) ※ 당연 선정대상</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악성신생물, 제자리암종 등) ※ 원발성암 - 전이된 암이 아닌 처음 발생한 암 ※ 원발성 암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전이암 지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3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p>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암환자(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18세 미만 중 소득·재산기준 이하인 환자 (소득기준) <p>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body> <tr> <td>1인 : 2,674,134</td> <td>2인 : 4,419,131</td> <td>3인 : 5,657,588</td> </tr> <tr> <td>4인 : 6,875,896</td> <td>5인 : 8,034,882</td> <td>6인 : 9,142,043</td> </tr> </tbody> </table> <p>(재산기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단위 : 원)</p> <table border="1"> <tbody> <tr> <td>1인 : 361,127,914</td> <td>2인 : 402,974,388</td> <td>3인 : 432,673,597</td> </tr> <tr> <td>4인 : 461,889,568</td> <td>5인 : 489,683,022</td> <td>6인 : 516,233,669</td> </tr> </tbody> </table>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최대 3,000만원 • 위 사항을 제외한 암 최대 2,000만원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 연월일, 최종 진단 필수 기재) • 보건소 방문 신청 전 유선 문의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1인 : 2,674,134	2인 : 4,419,131	3인 : 5,657,588	4인 : 6,875,896	5인 : 8,034,882	6인 : 9,142,043	1인 : 361,127,914	2인 : 402,974,388	3인 : 432,673,597	4인 : 461,889,568	5인 : 489,683,022	6인 : 516,233,669	<p>• 관할 시군구 보건소</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성인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5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폐암 - '21.6.30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 후 수검일 기준 만 2년이내 5대암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21.6.30 이전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2024.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2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p>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가입자) ※ 당연 선정대상</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악성신생물, 제자리암종 등) ※ 원발성암 - 전이된 암이 아닌 처음 발생한 암 ※ 원발성 암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전이암 지원 가능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300만원(비급여 지원 불가)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p>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p>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암환자(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18세 미만 중 소득·재산기준 이하인 환자 (소득기준) <p>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단위 : 원)</p> <table border="1"> <tbody> <tr> <td>1인 : 2,674,134</td> <td>2인 : 4,419,131</td> <td>3인 : 5,657,588</td> </tr> <tr> <td>4인 : 6,875,896</td> <td>5인 : 8,034,882</td> <td>6인 : 9,142,043</td> </tr> </tbody> </table> <p>(재산기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단위 : 원)</p> <table border="1"> <tbody> <tr> <td>1인 : 361,127,914</td> <td>2인 : 402,974,388</td> <td>3인 : 432,673,597</td> </tr> <tr> <td>4인 : 461,889,568</td> <td>5인 : 489,683,022</td> <td>6인 : 516,233,669</td> </tr> </tbody> </table>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최대 3,000만원 • 위 사항을 제외한 암 최대 2,000만원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 연월일, 최종 진단 필수 기재) • 보건소 방문 신청 전 유선 문의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1인 : 2,674,134	2인 : 4,419,131	3인 : 5,657,588	4인 : 6,875,896	5인 : 8,034,882	6인 : 9,142,043	1인 : 361,127,914	2인 : 402,974,388	3인 : 432,673,597	4인 : 461,889,568	5인 : 489,683,022	6인 : 516,233,669									
1인 : 2,674,134	2인 : 4,419,131	3인 : 5,657,588																				
4인 : 6,875,896	5인 : 8,034,882	6인 : 9,142,043																				
1인 : 361,127,914	2인 : 402,974,388	3인 : 432,673,597																				
4인 : 461,889,568	5인 : 489,683,022	6인 : 516,233,669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문 의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소득기준) (단위 :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 보건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24년 기준 중위소득</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r> <tr> <td rowspan="2">소아 청소년</td> <td>희귀질환 (130%)</td> <td>2,896,979</td> <td>4,787,392</td> <td>6,129,054</td> <td>7,448,887</td> <td>8,704,456</td> </tr> <tr> <td>4대질환 (160%)</td> <td>3,565,512</td> <td>5,892,174</td> <td>7,543,451</td> <td>9,167,861</td> <td>10,713,176</td> </tr> <tr> <td rowspan="2">성인</td> <td>희귀질환 (130%)</td> <td>2,674,134</td> <td>4,419,131</td> <td>5,657,588</td> <td>6,875,896</td> <td>8,034,882</td> </tr> <tr> <td>4대질환 (160%)</td> <td>3,565,512</td> <td>5,892,174</td> <td>7,543,451</td> <td>9,167,861</td> <td>10,713,176</td> </tr> <tr> <td rowspan="2">부양의무자 가구</td> <td>희귀질환 (200%)</td> <td>4,456,890</td> <td>7,365,218</td> <td>9,429,314</td> <td>11,459,826</td> <td>13,391,470</td> </tr> <tr> <td>4대질환 (240%)</td> <td>5,348,268</td> <td>8,838,262</td> <td>11,315,177</td> <td>13,751,792</td> <td>16,069,764</td> </tr> </tbody> </table>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소아 청소년	희귀질환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4대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성인	희귀질환 (13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4대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부양의무자 가구	희귀질환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4대질환 (240%)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2	16,069,764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소아 청소년	희귀질환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4대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성인	희귀질환 (13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4대질환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부양의무자 가구	희귀질환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4대질환 (240%)	5,348,268	8,838,262	11,315,177	13,751,792	16,069,764																																																					
<p>(재산기준)</p> <p>※ 질병관리청 발행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단,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만 가능) 																																																											
<p>[지원내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항목</th> <th>건강보험 가입자</th> <th>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th> </tr> </thead> <tbody> <tr> <td> 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진료비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td> <td>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td> <td>미지원</td> </tr> <tr> <td> 간병비(월 30만원)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충족하는 자 </td> <td>지원</td> <td>지원</td> </tr> <tr> <td> 특수식 구입비 - 특수조제 분유(연간360만원이내) / 28개질환 - 저단백 즉석밥(연간168만원이내) / 28개질환 - 옥수수 전분(연간 168만원이내) / 9개질환 ※ 당원병 환자를 위한 혈당관리 </td> <td>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19세 이상인자 지원</td> <td>19세 이상만 지원</td> </tr> </tbody> </table>		지원항목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진료비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미지원	간병비(월 30만원)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충족하는 자	지원	지원	특수식 구입비 - 특수조제 분유(연간360만원이내) / 28개질환 - 저단백 즉석밥(연간168만원이내) / 28개질환 - 옥수수 전분(연간 168만원이내) / 9개질환 ※ 당원병 환자를 위한 혈당관리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19세 이상인자 지원	19세 이상만 지원																																														
지원항목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진료비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자	미지원																																																									
간병비(월 30만원)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충족하는 자	지원	지원																																																									
특수식 구입비 - 특수조제 분유(연간360만원이내) / 28개질환 - 저단백 즉석밥(연간168만원이내) / 28개질환 - 옥수수 전분(연간 168만원이내) / 9개질환 ※ 당원병 환자를 위한 혈당관리	소득·재산 조사 기준에 적합한 19세 이상인자 지원	19세 이상만 지원																																																									
<p>※ 지원 항목에 따라 대상질환 및 추가 구비서류 상이</p>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 독거노인 및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로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및 합병증 예방관리, 건강형태 개선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 대상자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 </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이상 어르신 - 집중대상 : 65세, 70세, 75세 도래어르신, 90세 이상 장수어르신, 65세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 및 빈곤위기가정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건강포괄평가 및 맞춤형 연계서비스 • 건강포괄평가 후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관리 • 건강위험도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독거 특화사업 운영,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등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 독거노인 및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로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및 합병증 예방관리, 건강형태 개선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 대상자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이상 어르신 - 집중대상 : 65세, 70세, 75세 도래어르신, 90세 이상 장수어르신, 65세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 및 빈곤위기가정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건강포괄평가 및 맞춤형 연계서비스 • 건강포괄평가 후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관리 • 건강위험도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독거 특화사업 운영,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등 	<p>• 관할 시군구 보건소</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 독거노인 및 7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로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및 합병증 예방관리, 건강형태 개선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 대상자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이상 어르신 - 집중대상 : 65세, 70세, 75세 도래어르신, 90세 이상 장수어르신, 65세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 및 빈곤위기가정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건강포괄평가 및 맞춤형 연계서비스 • 건강포괄평가 후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관리 • 건강위험도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독거 특화사업 운영,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등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p>수원시 행복정신 건강복지 센터</p> </td> <td> <p>[대 상] · 전 연령</p> <p>[주요사업] · 정신건강자원봉사단, 마음건강로드맵 운영 · 재난심리지원 및 회복탄력역성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 마음건강관리사업(마음건강상담실, 톡톡열린상담실(정신과전문의), 찾아가는 마음산책 등) / 모든 내소상담 사전예약 필수</p> <p>[시설현황] · 장안구 송원로 101번길 장안구청 1층(조원동) / ☎ 253-5737</p> </td> </tr> <tr> <td> <p>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p> </td> <td> <p>[대 상] · 0세~18세</p> <p>[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정신건강 선별검진 후 전문의 상담 및 사례관리 · 맞춤형 조기 중재(방문, 내소, 전화상담) ·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 교육(학생, 교사, 학부모 등) 및 홍보 · 학교 정신건강사업(학교폭력 예방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1~2층(화서동) / ☎ 242-5737</p> </td> </tr> <tr> <td> <p>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p> </td> <td> <p>[대 상] · 19세~64세</p> <p>[지원내용] ·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연합체육대회, 회원 예술제 등 개최 · 시민 정신건강 강좌 개최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47-0888</p> </td> </tr> <tr> <td> <p>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p> </td> <td> <p>[대 상] · 65세 이상</p> <p>[지원내용] · 노인 정신질환(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상담 및 등록 관리 · 교육 및 홍보 · 노인 자살예방사업 등</p> <p>[시설현황] · 영통구 영통로 396(영통동) 영통구보건소 / ☎ 273-7511</p>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수원시 행복정신 건강복지 센터</p>	<p>[대 상] · 전 연령</p> <p>[주요사업] · 정신건강자원봉사단, 마음건강로드맵 운영 · 재난심리지원 및 회복탄력역성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 마음건강관리사업(마음건강상담실, 톡톡열린상담실(정신과전문의), 찾아가는 마음산책 등) / 모든 내소상담 사전예약 필수</p> <p>[시설현황] · 장안구 송원로 101번길 장안구청 1층(조원동) / ☎ 253-5737</p>	<p>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p>	<p>[대 상] · 0세~18세</p> <p>[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정신건강 선별검진 후 전문의 상담 및 사례관리 · 맞춤형 조기 중재(방문, 내소, 전화상담) ·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 교육(학생, 교사, 학부모 등) 및 홍보 · 학교 정신건강사업(학교폭력 예방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1~2층(화서동) / ☎ 242-5737</p>	<p>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p>	<p>[대 상] · 19세~64세</p> <p>[지원내용] ·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연합체육대회, 회원 예술제 등 개최 · 시민 정신건강 강좌 개최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47-0888</p>	<p>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p>	<p>[대 상] · 65세 이상</p> <p>[지원내용] · 노인 정신질환(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상담 및 등록 관리 · 교육 및 홍보 · 노인 자살예방사업 등</p> <p>[시설현황] · 영통구 영통로 396(영통동) 영통구보건소 / ☎ 273-7511</p>	<p>• 해당 시설</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p>수원시 행복정신 건강복지 센터</p>	<p>[대 상] · 전 연령</p> <p>[주요사업] · 정신건강자원봉사단, 마음건강로드맵 운영 · 재난심리지원 및 회복탄력역성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 마음건강관리사업(마음건강상담실, 톡톡열린상담실(정신과전문의), 찾아가는 마음산책 등) / 모든 내소상담 사전예약 필수</p> <p>[시설현황] · 장안구 송원로 101번길 장안구청 1층(조원동) / ☎ 253-5737</p>											
<p>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p>	<p>[대 상] · 0세~18세</p> <p>[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정신건강 선별검진 후 전문의 상담 및 사례관리 · 맞춤형 조기 중재(방문, 내소, 전화상담) ·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 교육(학생, 교사, 학부모 등) 및 홍보 · 학교 정신건강사업(학교폭력 예방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1~2층(화서동) / ☎ 242-5737</p>											
<p>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p>	<p>[대 상] · 19세~64세</p> <p>[지원내용] ·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연합체육대회, 회원 예술제 등 개최 · 시민 정신건강 강좌 개최 등</p> <p>[시설현황]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47-0888</p>											
<p>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p>	<p>[대 상] · 65세 이상</p> <p>[지원내용] · 노인 정신질환(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상담 및 등록 관리 · 교육 및 홍보 · 노인 자살예방사업 등</p> <p>[시설현황] · 영통구 영통로 396(영통동) 영통구보건소 / ☎ 273-7511</p>											

□ 보건소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센터 운영

세 부 사 업		문 의						
<p>• 지원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수원시 자살예방 센터</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전화, 내소, 게시판, 실시간) · 자살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군인 등) · 생명사랑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운동 등 <p>[시설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3층(화서동) / ☎ 247-3279 </td> </tr> <tr> <td>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td> <td>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질환 관리사업 및 가족 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자원 개발사업 등 <p>[시설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56-9478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수원시 자살예방 센터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전화, 내소, 게시판, 실시간) · 자살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군인 등) · 생명사랑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운동 등 <p>[시설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3층(화서동) / ☎ 247-3279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질환 관리사업 및 가족 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자원 개발사업 등 <p>[시설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56-9478 	<p>• 해당 시설</p>
구 분	지원대상 및 내용							
수원시 자살예방 센터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전화, 내소, 게시판, 실시간) · 자살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군인 등) · 생명사랑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운동 등 <p>[시설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3층(화서동) / ☎ 247-3279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p>[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령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질환 관리사업 및 가족 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자원 개발사업 등 <p>[시설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로3가) / ☎ 256-9478 							